

중국 환경정책 핸드북



한중환경협력센터

중국 환경정책 핸드북

2020.2

한중환경협력센터

중국 환경정책 핸드북

2020.2



한중환경협력센터

중국 환경정책 핸드북

2020.2



한중환경협력센터

I. 환경정책 개요	1
1. 지도사상	3
2. 주요 정책계획	4
3. 신중국 70년 환경보호정책 회고	8
II. 분야별 환경정책	11
1. 국토·자연환경	13
2. 대기환경	18
3. 물환경	23
4.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27
5. 자원순환	29
6. 해양환경	32
7. 농업·농촌환경	37
8. 환경보호재정	40
III. 주제별 환경정책	43
1. 장강경제벨트 환경보호	45
2. 추동계 대기오염관리	53
3. 동물 전염병에 따른 생물안전 대처	57
4. 기업의 오염배출과 규제	60
5.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64
6. 환경모니터링 및 정보화	66
7. 환경문제에 대한 공중참여	69
8. 녹색세제 건설	71
9. 당의 환경보호책임 강화	75
10. 지방환경조직 수직개혁	78
IV. 참고자료 목록	81



I. 환경정책 개요

1

지도사상

○ 생태문명

- <생태문명체제개혁총체방안>(중공중앙·국무원, 2015.9)에서 ‘생태문명 제도체제’ 건립을 밝힘
- 제19차 당대회(2017.10)에서 ‘5위1체’(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체제로서 생태문명을 위치시킴
- 2018년에는 ‘생태문명’이 「헌법」에 명문화되었고, 제8차 전국생태환경 보호대회(2018.5)를 개최해 ‘생태환경문제 해결, 오염방지공견전 추진, 생태문명건설을 새 단계로 추동’ 등 결정
- 당19기4중전회(2019.10)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 견지,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능력 현대화 추진의 약간의 중대결정>에서 생태환경보호제도(생태 환경보호·국토규획·녹색생산소비·환경오염관리·농업농촌환경관리·환경 법제), 자원고효율이용제도, 생태보호수복제도, 생태환경보호책임제도를 통해 ‘생태문명제도체제’를 완비하여 ‘사람과 자연의 조화공생 촉진’을 하자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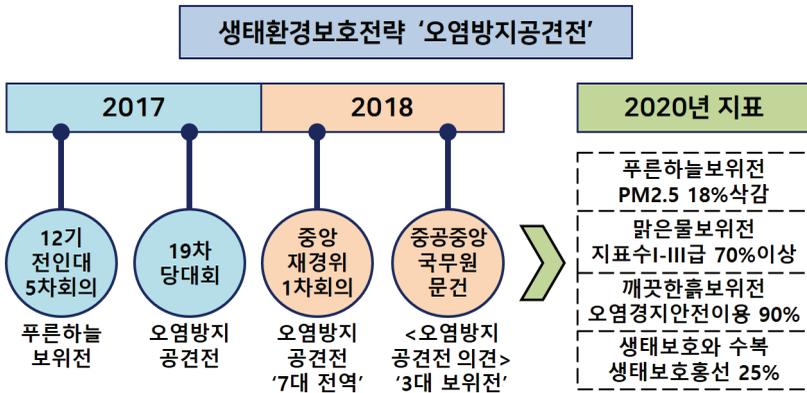
○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

- 2005년 시진핑 제창, 2017년 제19차 당대회 보고된 환경이념
- 녹수청산이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생태문명과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자고 지도
- 산·수·임·전·호 통합관리, 엄격한 생태환경보호 및 피해배상 제도 도입, 자원절약과 재활용, 환경자원가치평가, 녹색발전 및 녹색생활 등 주요 환경정책의 이념적 기반

2

주요 정책계획

- 「환경보호법」 개정·시행(2015.1)으로 엄격히 환경정책 집행
 - 법률조항을 대폭 늘려서(47개에서 70개로 늘어남) 불법배출 처벌, 일자수 누적 처벌, 행정구류 집행, 환경영향평가 이전 착공 불가, 기업 블랙리스트, 환경공익소송, 공직자 책임 등이 도입 내지 강화됨
- <13.5 생태환경보호규획>(국무원, 2016.11)은 전체 방향 제시
 - 총 10장에 걸친 종합적 환경보호규획으로서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지표 등 제시
 - 주요 내용: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포함한 환경질 12개 강제지표 제시, 대기·물·토양에서 3대 행동계획 추진, 생태환경관리체계 현대화
- 3대 오염방지행동계획, 「토양오염방지법」 등 제정
 - 대기(대기10조, 2013~2017), 물(수10조, 2015~2030), 토양(토10조, 2016~2030)에 대해 행동계획을 제정했고, 환경보호부는 2015년부터 「토양오염방지법」을 준비해 2019년 시행
- <빈곤탈출공견전>(중공중앙·국무원 2015.11)의 생태환경보호 연계
 - 생태보호와 결합한 빈곤탈출: 퇴경환림, 천연림보호, 사막화관리, 습지 보호, 수생태관리, 국가공원체제건설 등 생태보호사업 추진과 생태보상을 통한 빈곤 탈출
 - 농촌주거환경개선: 빈곤지구의 농촌가옥과 화장실개조, 생활쓰레기와 오수처리, 전통촌락보호, 농촌환경정비 등 생활여건 개선으로 아름다운 농촌 건설



〈오염방지공견전 입안 및 추진 개요〉

- ‘푸른하늘보위전’ 등 환경보호대책 추진(제12기 전인대 제5차 회의 중 국무총리 업무보고, 2017.3)
 - 푸른하늘보위전 및 5대 대책: 석탄연소오염문제 해결, 산업오염원 모니터링 및 정리, 차량배기가스 정비, AQI(Air Quality Index) 200 이상 오염날씨 대응, 엄격한 환경집법과 문책
 - 물과 토양 오염관리: 중점유역 물오염관리, 농업면오염원 관리, 토양 오염조사, 쓰레기분류제도 추진
 - 생태보호와 건설: 생태보호홍선, 삼림질량 제고, 장강경제벨트 생태회복, 산수임전호 생태보호사업, 퇴경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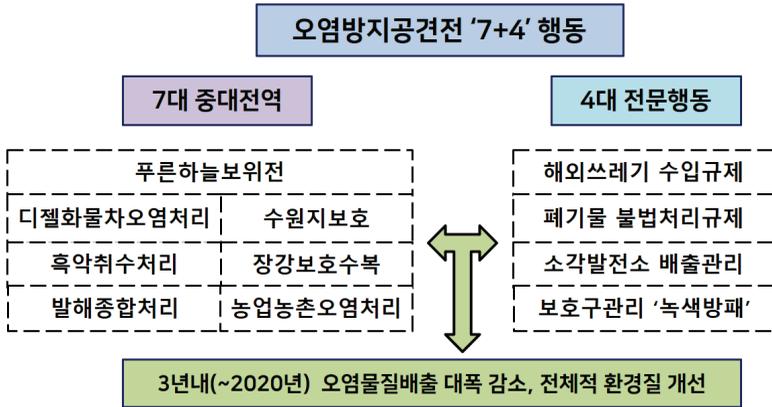
- 2017년 이후 당중앙의 ‘오염방지공견전’ 전략 입안·추진
 - 제19차 당대회보고(총서기, 2017.10)에서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한 3대 공견전의 하나로써 ‘오염방지공견전’을 발표
 - 중앙재경위원회 1차회의(2018.4)에서 오염방지공견전 ‘7대 전역’을 발표했는데, 이는 ‘승리하자’ 1개 전역에 푸른하늘보위전, ‘잘싸우자’ 6개 전역에 디젤화물차오염처리공견전, 도시흑악취수처리공견전, 발해

종합처리공견전, 장강보호수복공견전, 수원지보호공견전, 농업농촌오염
처리공견전 포함

- 또한 동 회의는 오염방지공견전의 4대 구조조정 분야(산업·에너지·운수·농업)를 설정하여 3년내 뚜렷한 효과를 기대

○ <생태환경보호 및 오염방지공견전에 대한 의견>(중공중앙·국무원, 2018.6)에
따른 '3대 보위전'과 '7+4' 행동

- 2035년 비전: 자원절약과 생태환경보호 구조 형성으로 환경 상황을
근본 개선하여 '아름다운 중국'을 기본 실현
- 3대 목표(2020년) 추진: 2020년까지 생태환경상황을 제고하고, 오염
물질배출을 대폭 감소하며, 환경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등 '샤오강
사회'에 걸맞는 환경보호수준 달성
- 3대 영역(대기, 물, 토양) 보위전 추진: 푸른하늘보위전, 맑은물보위전,
깨끗한흙보위전
- 3대 기초 건설 추진: 녹색발전 추동, 생태보호와 수복 가속화, 생태
환경관리체계 개혁
- 2020년 지표: PM2.5를 2015년 대비 18% 이상 저감, 지급이상 도시
공기질 우량일수 80% 이상, 지표수 I-Ⅲ급 70% 이상, V급 미만
5% 이내, 연근해수질 우량비율 70%,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배출
2015년 대비 15% 이상 감소, COD와 암모니아성 질소 배출 10% 이상
감소, 오염경지 안전이용율 90% 내외, 오염토지 안전이용율 90% 이상,
생태보호홍선 면적 25% 내외, 삼림피복율 23.04% 이상
- 생태환경부(2018.6)는 오염방지공견전 추진을 위하여 '7+4' 행동으로서
7대 전역과 함께 해외쓰레기 수입규제, 고체폐기물과 위험폐기물 불법
처리규제, 쓰레기소각발전업종배출규제, '녹색방패' 명칭의 자연보호구
관리감독 등 4개 전문행동을 시행



〈오염방지공견전 주요 행동계획〉

3

신중국 70년 환경보호정책 회고



〈2019년 국경절 행사 중 '녹수청산' 주제 행진대오〉

○ 환경보호전략정책 70년 변천

- 환경보호전략탐색기(1949~1971): 수토 유지, 삼림과 야생생물 보호 등 기본적 환경보호법규 마련, 공업에 의한 환경오염과 생태훼손이 빠르게 악화
- 환경보호국책수립기(1972~1991): 1973년 제1차 전국환경보호회의를 개최하였고, 1983년 '환경보호는 기본국책'이라고 공식화. 3폐(폐수·폐기체·폐기물) 관리를 추진하였고, 1979년에 환경보호법 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3동시(동시설계·동시시공·동시투입생산), 오염배출비용 부과 등 기본적 제도 마련
- 지속가능발전전략기(1992~2000): 지역적 환경오염과 돌발오염사고발생 등에 대처하여 중점유역의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도시환경정비 등 실시
- 환경우호전략기(2001~2012):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 사회 건설을 국정 목표로 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모색. 오염물배출 총량 관리에 집중하였고, 생태환경보호시범사업을 전개. 2008년 환경보호부가 출범하였고, 주요 분야별 법률이 제개정됨

- 생태문명전략기(2013~현재): 생태문명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국정 목표로 하고,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 엄격한 법집행체계를 마련하였고, 오염방지공견전을 실시하고, 환경보호세, 생태보상 등으로 환경경제 정책을 개혁. 2018년 생태환경부 출범으로 통합적 환경보호 집행에 착수

○ 최근 생태환경보호 발전의 주요 흐름

- 환경보호의 전략적 지위 제고: 특히 18대 당대회 이래 생태문명사상을 확립하고 생태문명을 헌법과 당장에 넣었음
- 환경오염관리 강화: 대기, 수질, 토양에 관한 3대 행동계획으로 환경질을 지속 개선
- 생태보호를 안정적으로 추진: 산수임전호초 생태보호와 복원, 국가공원 건립, 생태보호홍선 획정 등
- 환경보호제도 개혁: 생태환경피해책임추궁, 오염물질배출허가, 해외쓰레기 수입금지 등 제도 수립
- 조직개혁 심화: 1974년 환경보호영도소조 설립 이래 환경보호국, 환경보호총국, 환경보호부에 이어 생태환경부로 발전
- 엄격한 법규 집행: 2015년 신환경보호법을 시행하였고,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을 통해 15만여개 환경문제를 해결
- 국제협력 확대: 환경분야 30여개 국제협약 및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기후변화협상을 이끌어어나가는 등 지구환경보호에 노력



Ⅱ. 분야별 환경정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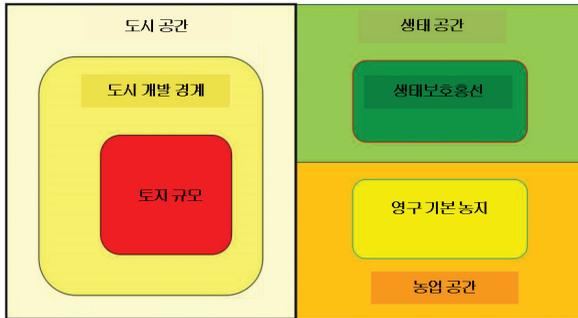
국토·자연환경

- 생태보호홍선으로 환경보호 추진
 - ‘생태보호홍선’은 2011년 국무원에서 처음 문서화되었고, <국가생태보호홍선-생태공능홍선획정기술지침(시행)>(환경보호부, 2014.1) 등이 발표됨
 - <생태보호홍선 획정과 준수에 관한 약간의 의견>(중공중앙·국무원, 2017.2)에 따라 생태보호홍선 업무를 본격 시행
 - 용어정의: 생태공간 중에서 중요한 생태기능을 가져서 강제적으로 엄격히 보호해야 할 구역. ‘생태기능중요구역’(수원함양·생물다양성보호·수토보호·방풍방사·해안생태안정 등 기능)과 ‘생태환경민감취약구역’(수토유실·사막화 등)으로 구분
 - 추진목표: 2017년까지 징진지 지역과 장강경제벨트에 속하는 각 성, 2018년까지 기타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생태보호홍선 확정 요구. 2020년까지 전국의 생태보호홍선 획정 완료 및 실지측량으로 생태보호홍선 제도를 기본 건립
 - 획정·측량에 관한 기술규정: <생태보호홍선 획정지침>(환경보호부·국가발개위, 2017.5), <생태보호홍선 경계측량 기술규정>(생태환경부·자연자원부, 2019.8)
 - 생태보호홍선 준수 의무: ① 지역 당위원회·정부에서 보호 책임, ② 생태보호홍선 획정 후 관련 공간관리계획을 수정·반영, ③ 원칙적으로 개발금지, ④ 생태보호홍선 편입에 대한 생태보상 추진, ⑤ 생태보호홍선 내 생태기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분배, 지도간부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 ⑥ 규제위반시 관계자 법적 책임



〈생태보호홍선 도면과 경계 획정〉

- ‘3선1단’, ‘3개 통제선’ 등으로 국토공간관리 체계화
 - <“생태보호홍선, 환경질량저선, 자원이용상선과 환경문제사업명단” 편제 기술지침(시행)>(환경보호부, 2017.12)은 국토공간과 환경총량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약칭 ‘3선1단’이라 불리는데, 장강경제벨트 11개 성(시)와 칭하이성에서 먼저 편제하였고 여타 12개 성(시)는 2020년에 발표
 - <국토공간규획에서 3개 통제선을 정하는데 관한 지도의견>(중공중앙·국무원, 2019.11)에 따라 2020년까지 3개 통제선(생태보호홍선, 영구기본농지, 도농개발경계)을 획정하여 도면화하고 2035년까지 과학적으로 질서있는 국토공간체계 형성을 목표로 하며, 국토공간규획 총괄인 자연자원부가 타 부처와 협조·조정하고 지방정부에서 획정
 - 3개 통제선 중에서 생태보호홍선에는 생태기능이 중요하거나 민감·취약한 지역을 우선 편입하고, 영구기본농지는 부실획정하거나 위법 점용하고 오염이 심한 곳을 정리하며, 도농개발경계는 수용력·인구·경제·발전잠재력을 고려하여 개발용량을 제한하고 유보지를 남기며, 수면·갯벌 점용이 금지됨



〈3개 통제선 획정을 통한 공간규획 개념〉

○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자연보호지역 체제 개혁

- 60여년간 많은 자연보호지를 건설하여 1.18만곳(육역 18%, 영해 4.6%)에 달하나 경계 불명확, 지정지역 중첩, 관리주체 다수, 권한·책임 불명, 보호·발전간 충돌 등 문제로 관리 미흡
- 〈국가공원체제 건립 총체방안〉(중공중앙·국무원, 2017.9)은 국가공원 체제 통일 건립을 위해 2020년까지 시범사업 및 국가공원체제를 초보 형성하여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함
- 〈국가공원 주체의 자연보호지체제 건립 지도의견〉(중공중앙·국무원, 2019.6)은 국토면적의 18% 이상 보호지역화, 국가공원·자연보호구·자연공원으로 보호지역 재분류, 2020년까지 제1기 국가공원 건립, 2035년 자연보호지체제 완성을 목표로 함
- 보호지역 구분: (국가공원) 가장 중요·독특·풍부한 자연생태계·자연경관·자연유적·등으로 인해 세계적 가치, 국가의 상징, 국민의 동의가 있는 곳. (자연보호구) 보호하여야 하는 전형적인 자연생태계·보호종분포지·자연유적지로서 면적이 비교적 크고 보호대상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 (자연공원) 보호가 중요한 자연생태계·자연유적·자연경관으로서 생태·경관·문화·과학 가치가 있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곳이며, 기존 삼림공원·지질공원·해양공원·습지공원 등 자연공원 유형을 포괄

- 국가공원시범사업이 칭하이 산장웬(장강·황하·란찬강 발원지), 기련산, 동북호표, 판다, 후베이 선농자 등 10곳(12개성 22만km²)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호표국가공원의 경우 호랑이·표범 개체수가 안정되는 등 성과를 보임
- 국가공원관리국(국가임업초원국)은 향후 (가칭)「자연보호지법」을 기본법으로 입법하여 자연보전법률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며, 2020년에 제1기 국가공원을 정식 설립할 예정
- 생태환경부는 보호지역내 불법행위 조사, 자연보호감독감찰행동(‘녹색방패’) 지속 실시 등을 추진



〈국가공원체제 시범사업(제1기 10개소)〉

○ 빈곤탈출과 연계한 생태보상정책 시행

- 생태보상은 「퇴경환림조례」(국무원, 2002)를 필두로 시작되어 다양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물환경, 음용수, 수도유실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생태환경보호제도이며, 생태보상을 통한 빈곤탈출은 〈빈곤탈출공견전〉의 5대 정책수단의 하나이기도 함

- <생태종합보상시범사업방안>(발개위, 2019.11)은 자금사용 효율, 참여자의 주동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주로 서부와 남부의 50개 현급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빈곤하면서도 생태보상업무기초가 좋은 지역을 우선 선발할 계획

○ 생물유전자원과 생물안전 관련 법제 강화

- 생물다양성협약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초안)」이 입법 추진 중에 있음
- 지방에서는 「운남성 생물다양성보호조례」(2019.1)에서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외래종 관리를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지방에서 유전자원 보호 법규가 제정되고 있음
- 최근 전인대의 「생물안전법」 입법 업무에서는 생물유전자원 보호, 침입성 외래종과 신종 병원균 관리 등이 논의 중

○ 2020년에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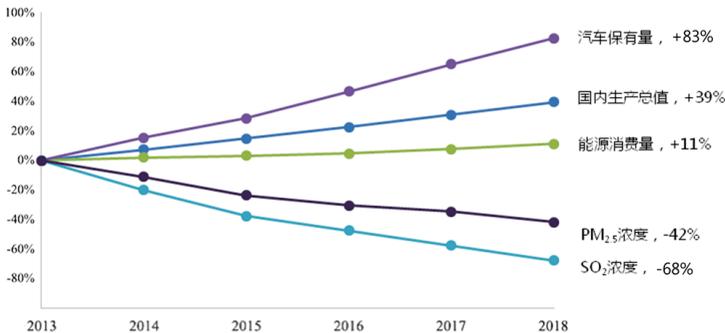
- CBD COP15이 2020년 10월 운남 쿤밍에서 개최되어 종전 글로벌 전략계획(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 종료하고 새로운 체제(Post 2020 지구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예정
- 총회 주제는 “생태문명 - 지구생명공동체 건설”이며, 생태문명을 주제로 개최하는 최초의 유엔회의
- 총회 준비업무를 위해 COP15준비업무조직위(공동주임 생태환경부 부장, 운남성 성장) 등이 출범·운영되고 있음

2

대기환경

○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대기10조) (국무원, 2013.9)

- 주요 목표는 2017년말까지 전국 지급시 이상 지역에서 PM10농도를 10%이상 낮추고, 우량일수를 높이며, 징진지·장삼각·주삼각 구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낮추며, 베이징시 PM2.5농도 목표를 60ug/m³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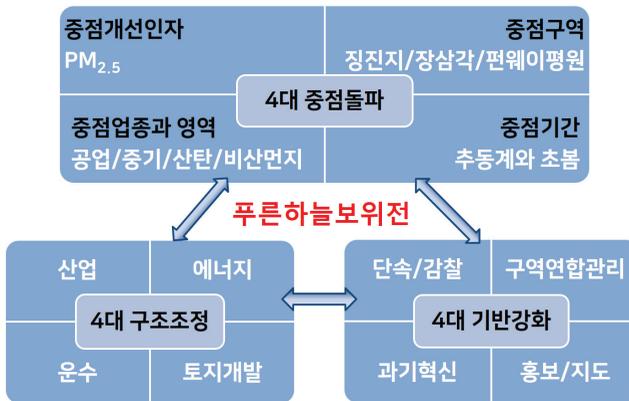


<74개 도시 대기질과 GDP, 에너지소비량, 차량댓수 변화>

○ <푸른하늘보위전 승리 3년 행동계획>(국무원, 2018.7)

- 대기10조(2013~2017)에 이어지는 2차 계획 성격
- 푸른하늘보위전(오염방지공견전 중 일부, 2018.6)에 따라 3년 행동계획을 편제하고 중점구역에서 4대 구조조정과 구역연합관리 및 중오염날씨 대응 등을 추진
- 2015년 대비 2020년 지표: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15%이상, PM2.5 18%이상, 중도 이상 오염날씨 25%이상 감소

- 중점구역: 징진지 및 주변지구, 장삼각지구, 편웨이평원
- 산업, 에너지, 운수, 용지 등 구조조정
- 배출저감 주요 조치: 중점구역 추동계대책, 디젤화물차오염처리공전전, 공업보일러처리, VOCs정리
- 구역연계관리 및 중오염날씨 대응, 모니터링체계 건설 등



〈푸른하늘보위전 행동계획 주요 골자〉

○ 푸른하늘보위전 목표달성 독려

- 생태환경부는 매월 전국 337개 지급 이상 도시의 대기질 순위와 징진지 및 편웨이평원 39개 도시의 먼지강하량을 발표하며, 성정부에서 하위권 도시 책임자 약담 등 조치
- 〈푸른하늘보위전 량화 문책규정〉(생태환경부, 2019.9)은 “계절별 고지, 반년 약담(초치 후 협의), 연도 문책”에 따라 대기질이 정량적으로 명확히 악화된 것에 대해 문책을 시행. 업무실적이 부실하고 대기오염이 문제되는 도시는 계속 압박해 책임을 완수하게 함

○ 푸른하늘보위전 관련 오염배출원 관리감독강화

- 생태환경부는 중점구역 감독강화를 위해 <2018-2019년 푸른하늘보위전 중점구역 감독강화방안>(생태환경부, 2018.6)을 2018.6~2019.4 기간 중 추진하는 등 환경오염점검팀을 운영(1회 2주)하여 산란오기업, 석탄 보일러정리, 기업의 오염처리, 배출허가제도집행, 건축공사장관리, 비산 먼지관리 등 파악 후 조치(2017년 이후 3.7만명 참여, 106만곳 점검, 9.7만건 문제 조치)
- 최근 <푸른하늘보위전 중점구역 감독강화정보조업무방안>(생태환경부, 2019.5)을 정하여 2019.5~2021.3 기간 중 중점구역(징진지·편웨이평원) 39개 도시에 15일마다 300개 팀을 보내서 감독업무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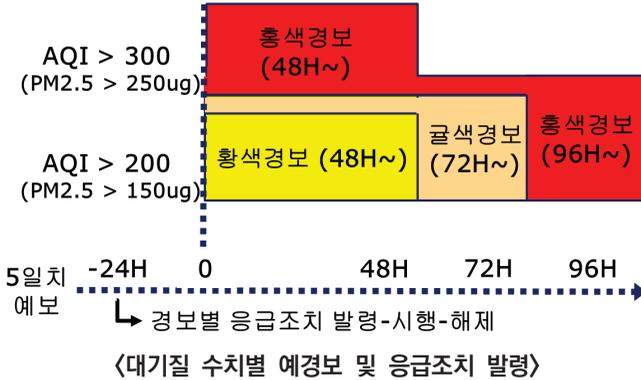
○ 대기오염관리 연구 및 지역별 대책수립 지원

- 국가대기오염방지연구연합센터(2017.9설립): 1(환경과학연구원)+X(환경 모니터링센터, 환경규획원, 위성환경응용센터, 베이징대, 칭화대, 중국과학원 소속 여러 연구소 등) 방식이며, 과기부에서 지원하여 대기 오염원인과 처리방안을 연구
- 연합센터에서 28개 밀착연구단을 구성하여 징진지 2+26개 도시별 (1시1책) 대기오염종합관리방안 수립 지원

○ 대기질 예경보 및 응급대책 발령

- 예보업무는 국가(1곳), 구역(6곳), 성(31+곳), 도시(100+곳) 등 4단계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예보센터들이 월2회 대기예보에 대한 화상회의 실시
- 5일간 AQI 예보치를 공개하며, 중국환경관측종합센터에서 4가지 예보 모델과 이를 취합하는 알고리즘을 예보에 사용하며, 최근 중국 배출원이 많이 줄어서 예보치가 실제보다 높은 편

- 응급대책은 경보시점 이전에 발령·시행되며, 응급대책으로 인해 대기질 피크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 경보단계별 배출량 감축은 황색(10%), 귤색(20%), 홍색(30%)이며, 배출물질 중에 감축이 용이한 것 위주로 감축이 됨



○ 중오염날씨 응급조치 강화

- 〈중오염날씨응급조치수정업무 지도의견〉(생태환경부, 2018.8)은 2020년 까지 예경보등급기준을 통일하고, 사업장별 응급조치는 2018년 징진지 2+26도시, 2019년 편웨이평원·장삼각·주삼각·청두충칭지구를 거쳐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와 구역으로 확장할 계획
- 〈중오염날씨 응급배출감소조치 강화 지도의견〉(생태환경부, 2019.7)은 징진지·편웨이평원 7개 성·직할시를 대상으로 사전경보, 등급별 배출 감소율 차별화, 〈중오염날씨 중점업종 응급저감조치 제정 기술지침〉에 따른 배출관리강화(일부 업종은 업체별 ABC등급 분류), 난방열공급 같은 민생기업 관리, 비도로차량 및 면오염원 관리, 응급대책명단 1기업당 1대책 추진, 경보시 중점업종 사전관리, 감독과 문책 등 추진

- 지방정부에서 중오염날씨 응급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장별 응급조치를 심사해 시행

〈중오염날씨 응급조치 강화 계획〉

연도	예경보등급기준 통일	사업장별 응급조치 관리
2018	편웨이평원, 장삼각지구, 청두충칭지구, 주삼각	징진지 2+26 도시
2019	전국 기타 지구	편웨이평원, 장삼각지구, 청두충칭지구, 주삼각
2020	전국 주요 도시와 구역	

○ 대기질 개선 상황

- 2019년 전국 337개 지급 이상 도시의 우량일수는 82%, 초미세먼지 (PM2.5)는 전년 대비 2.4% 감소. 베이징은 초미세먼지 12.5%가 감소하여 42ug/m³에 달함.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3~4% 가량 감소함

〈2019년 대기질 개선 상황〉

지역	우량 날씨 비율 (%)		PM2.5 (ug/m ³)	
	2018	2019	2018	2019
지급이상 도시	79.3	82	39	36
징진지 2+26 도시	50.5	53.2	60	57
베이징시	62.2	65.8	51	42

3

물환경

- <물오염방지행동계획>(수10조) (2015.4)
 - 지표: (2020년까지) 7대 중점유역 우량(3등급 이상) 수질 70% 이상, 도시흑악취수 10% 이내, 도시음용수원 우량 수질 93% 이상, 지하수질 불량 15%, 연근해 해수수질 우량(1, 2류) 70% 등. (2030년까지) 7대 중점유역 우량 수질 75% 이상, 도시음용수원 우량 수질 95%
 - 오염관리 대상: 공업배출수, 도시생활오수, 농업농촌오염, 선박항구배출수
 - 수생태환경안전: 음용수, 중점유역오염처리, 연근해환경보호, 도시흑악취수체정리, 물과 습지 생태계 보호
 - 경제구조전환: 산업구조, 공간배치, 순환발전
 - 수자원절약: 용수총량관리, 용수효율제고, 수자원보호
 - 과학기술지원: 기술활용, 연구사업, 환경산업
 - 기타 시장기제, 환경단속 등
- <13.5 생태환경보호규획>(국무원, 2016.11) 중 물환경개선
 - 유역별 관리대책: 중점유역 물오염방지규획 실시, 유역상하류 정부간 협조기제 마련. 장강유역 보호 강화, 수생생물다양성 보호, 선박·항구 오염방지, 총인오염종합처리 실시. 태호 등 주요 호수는 남조류 대발생 방지, 음용수안전 확보, 총인량 제어, 도시오수·농업면오염 중점 통제, 수생태 회복. 기타 주요 유역별 관리대책
- <중점유역 물오염방지규획 2016-2020>(환경보호부 외, 2017.10)
 - 주요 내용: 전국 지표수 수질 개선, 심각한 오염수체 감소, 음용수 안전 보장, 각 유역을 수생태관리구·물환경관리구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

- 지표: 2020년까지 7대 중점구역의 수질 3등급 이상을 70% 이상으로, 5등급 미만을 5% 아래로 규제. 그 외 각 구역별 수질목표 제시

○ ‘맑은물보위전’(오염방지공견전 중 일부, 2018.6)

- 주요 내용: 물오염방지행동계획 심화, 하장제·호장제 실시, 오염배출 저감과 생태용량 확대, 공업·농업·생활 오염원과 수생태 관리, 음용수 안전, 도시흑악취수체 처리, 오염수체 감소
- 맑은물보위전 내 5개 공견전: 수원지보호, 도시흑악취수체처리, 장강 보호수복, 발해종합처리, 농업농촌오염처리

○ ‘수원지보호공견전’ 실시

- <전국 집중식음용수수원지 환경보호 전문행동방안>(환경보호부·수리부, 2018.3)는 2년간 현금 이상 지역에서 지표수형 집중식 음용수 수원 보호구를 계획해 확정, 보호구 경계표지 설치, 보호구내 위법문제(오수 배출구 조사, 불법 건축·양식 등) 정리. 2019년에 3,626개 위법문제를 찾아내어 대부분 처리
- <향진 및 이하 집중식음용수수원지 생태환경보호 진일보추진 지도의견>(생태환경부·수리부, 2019.8)에 따라 전국 농촌의 ‘천톤만인’ 규모의 음용수 수원지 10,630곳 중 2019년까지 7,281곳(68.5%)에 보호구를 확정

○ ‘도시흑악취수체처리공견전’ 실시

- 도시 주변의 흑악취수체를 정리하는 <도시흑악취수체처리공견전실시 방안>(주건부·생태환경부, 2018.9)은 2020년말까지 지급이상 도시에서 흑악취수체 90% 이상 제거를 지표로 함. 징진지, 장삼각, 주삼각 구역 도시에서 조기에 전면 정리를 독려

- 생활오수수집관망건설과 결부하여 오수수집처리시설을 정비하며, 해면 도시와 생태연안선 건설을 추진하고, 빗물 면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며, 재생수와 우수 이용을 장려
- 2016~2019년 중 1조1천억위안을 투자하여 전국 295개 지급이상 도시(주·맹 제외)의 2,899개 흑악취수체 중에서 86.7%를 정리했으며, 중점도시(직할시·성회도시·계획단열시)는 96.2%, 기타 도시는 81.2%에 달함



〈최근 멸종 보고된 장강철갑상어〉

○ 수생생물 감소에 따른 보호조치

- 〈중점유역 수생생물다양성보호방안〉(생태환경부·농업농촌부·수리부, 2018.4)는 2020년까지 중점유역(장강·황하·주강·송화강·회하·해하·료하)에서 수생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현지내 보호, 수역 용도관리와 단속 등 체계를 완비하여 수생생물다양성 저하를 억제하고, 장강유역의 보호구내 어획 금지를 조치
- 2020년 1월에는 중국의 최대 담수어인 장강철갑상어 멸종, 장강유역에서 10년간 어획금지조치 개시 등 소식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음

○ 물환경 관리조직 및 기반 구축

- 생태환경부는 물환경부문 기구개혁을 추진하여 7개 유역(해역) 생태환경감독관리국과 그 관측연구센터 설립

- 2019년에 장강유역 2.4만km와 환발해 3,600km 연안으로 흐르는 오수 배출구 조사를 마쳤고, 향후 '14.5' 계획 기간에는 국가의 지표수측정 지점을 1,940개소에서 3,600개소로 늘릴 예정

○ 수질 개선 상황

- 전국 지표수 수질은 I~Ⅲ급이 늘고 V급 미만이 줄어들고 있는데, 2019년 전국 지표수 수질은 I~Ⅲ급이 74.9%로서 전년 대비 3.9% 상승, V급 미만이 3.4%로서 전년대비 3.3% 감소

〈2019년 수질 개선 상황〉

지역	I-Ⅲ급 비율 (%)				V급 미만 비율 (%)			
	2018	전년 대비	2019	전년 대비	2018	전년 대비	2019	전년 대비
전체 지표수	71.0	▲3.1	74.9	▲3.9	6.7	▼1.6	3.4	▼3.3
장강 유역	87.5	▲3.0	91.7	▲4.2	1.8	▼0.4	0.6	▼1.2

4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토10조) (2016.5)
 - 주요 내용: 2020년까지 토양오염 추세 억제, 농지와 건설용지 토양 환경안전 기본보장 등 토양환경리스크 기본적 제어. 2030년까지 토양 환경질을 향상시키고, 농지와 건설용지 토양환경안전 효과적 보장, 토양환경리스크 전면 제어
 - 10대 시책: 토양오염조사, 토양오염방지입법, 농지분류관리와 농업생산 환경안전, 건설용지관리와 주민환경안전, 미오염토양보호, 오염원 관리, 오염처리와 수복, 연구개발과 산업화, 정부 주도 토양환경관리체계 건립, 목표심사와 책임추궁

- ‘깨끗한흙보위전’(오염방지공견전 중 일부, 2018.6)
 - 주요 내용: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전면 실시, 중점구역·업종·오염물 관리, 농업용지와 도시건설용지 토양환경위험 관리, 토양오염관리와 수복 강화
 - (토양오염) 2018년까지 농업용지 토양오염상황조사 및 2020년까지 토양환경질 분류명단 편제, 2020년까지 건설용지 토양오염관리수복 명단 작성 및 중점업종 기업용지 토양오염조사 완료. (쓰레기분류) 2020년까지 도시와 현의 생활쓰레기 처리능력 개선, 비정규처리장 정리, 농촌쓰레기 분류 및 자원화 이용. (고체폐기물) 고체폐기물 수입 축소 및 쓰레기 수입 금지, 쓰레기없는도시 시범사업 추진, 자원화 이용, 위험폐기물 관리 강화

○ 「토양오염방지법」 등 법률법규 정비

- 「토양오염방지법」은 환경보호부에서 2013년부터 입법에 착수하고, 5년간 수정작업을 거쳐 전인대 상무위에서 제정해 시행(2019.1)
- 총 7장(총칙, 기획·표준·조사·모니터링, 예방·보호, 위험관리통제·정화, 보장·감독, 법률책임, 부칙) 99조로 구성
- 법률 주요 내용: 국가의 토양오염관리기본체계 확립(법정전수조사, 토양오염정보화 등), 오염원인자의 오염정화 책임 및 비용부담, 토양오염 예방 및 감독 강화(유독유해물질 및 중점관리감독업체 목록화관리), 토양오염방지표준체계 수립(오염토양 정화표준), 농업용지와 건설용지 오염관리 및 토지이용규제, 토양오염방지기금 조성, 위법시 법률책임 강화
- 부문규장으로서 3개 용지(오염용지, 농용지, 광공업용지)에 대한 토양환경관리방법을 제정(2016.12~2018.5)
- 또한 토양오염방지와 위험관리에 대한 기술규범으로서 <농용지 토양오염 위험관리표준>, <건설용지토양오염위험관리표준>을 제정(2018.6)

○ <지하수오염방지실시방안>(생태환경부 외, 2019.3)

- 주요 목표: 2020년까지 지하수오염방지에 관한 법규·표준체계와 전국 지하수환경모니터링체계를 초보 건립하며, 202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의 집중식 지하수형 음용수원수질 Ⅲ급 이상이 85% 가량이 되도록 하며, 2035년까지 전국 지하수질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써서 생태계 기능을 회복

5

자원순환

○ 폐기물관리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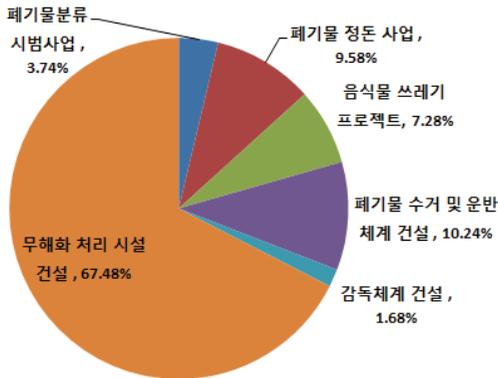
-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주요 원칙은 1) 감량화·자원화·무해화, 2) 전과정관리, 3) 분류관리, 4) 오염자책임부담
- 최근 법개정(2019.6)은 공업폐기물의 배출책임강화, 오염배출허가제 보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수거·운반·처리를 반영
- 「고체폐기물수입관리방법」(환경보호부 외, 2011.8)은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업무를 규정
- 「국가위험폐기물목록」(환경보호부 외, 2016.8 개정)은 바젤협약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분류하는 것이며, 8자리 분류번호와 위험특성(부식성·독성·가연성·반응성·감염성)을 부여하여 관리

○ 쓰레기 발생감량 및 자원화이용

- 「〈무폐도시〉 건설시범사업업무방안」(국무원, 2018.12)은 도시폐기물 종합관리 제도 및 기술체계를 수립하고, 전국 10개의 무폐도시 시범 사업을 통해 폐기물발생감소, 자원화이용, 매립축소, 위험폐기물안전 관리 등을 도모할 계획
- (비닐 사용제한) 〈비닐쇼핑백 생산·판매·사용 제한통지〉(국무원, 2008.6)에 따라 비닐쇼핑백 유상지급 등으로 사용을 줄이고 있는데, 최근 발개위에 따르면 2020년에 포장재, 배달음식용기, 농업용 비닐 등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
- (미세플라스틱 제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9년판)〉의 ‘제3류 도태류’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을 쓴 일상용품을 2020년말까지 생산금지하고 2022년말까지 판매금지

○ 분리수거·소각발전 등 폐기물 처리방식 개선

- <13.5전국성진생활쓰레기무해화처리건설규획>(발개위·주건부, 2016.12)은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처리시설, 수거·운반, 음식쓰레기처리 및 감독 관리)에 2,518억 위안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도시생활쓰레기 100% 무해화처리, 무해화처리분량 중 50% 이상 소각처리, 생활쓰레기분리수거 등 목표 제시
- <생활쓰레기분류제도실시방안>(국무원, 2017.3)은 2020년까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법규와 표준을 정비하고, 생활쓰레기 분류모델을 보급하고, 분리수거 의무화 도시에서 회수이용율을 35% 이상으로 할 것을 밝힘
- ‘오염방지공견전’(중공중앙·국무원, 2018.6)은 폐기물에 관련하여 도시의 생활쓰레기처리능력을 향상하고 소각발전을 강력 추진한다고 발표
- <전국 지급이상 도시 생활쓰레기분류업무 전면개시통지>(주건부 외, 2019.6)는 2020년까지 46개 중점도시, 2025년까지 전국 도시에서 생활쓰레기분류체계를 기본 건설할 것을 계획



<2016~2020년 도시생활폐기물 처리 투자계획>

○ 폐기물 수입제한 및 국내 자원순환 강조

- <해외쓰레기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수입관리제도개혁추진 실시방안>(국무원, 2017.7)은 2017년말에 위해가 큰 폐기물을 수입금지하였고, 2019년 까지 대체 가능 폐기물의 수입을 중지하고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계획
- 2017년부터 고체폐기물 수입제한 및 세관의 불법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입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9년 수입량은 1,347.8만톤으로서 2016년에 비해 수입종류 76%, 수입량 71% 감소
- 2020년은 폐기물수입 제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등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를 종결할 예정임

6

해양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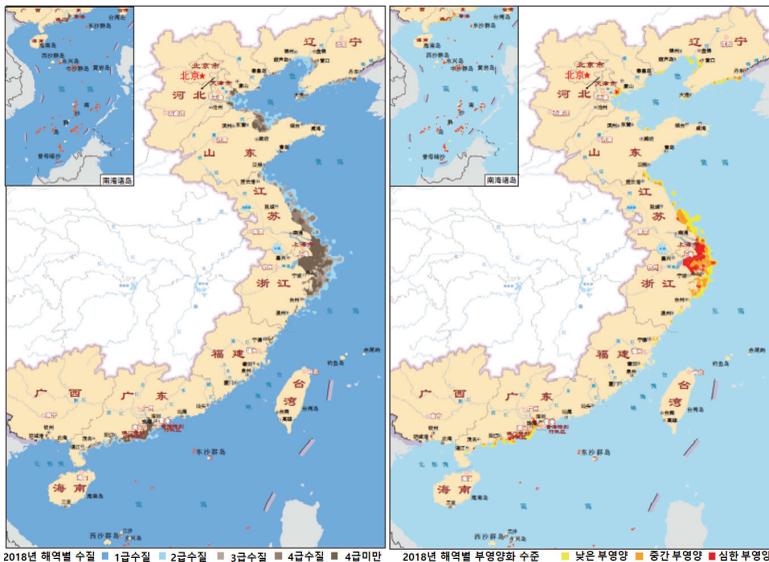
○ 해양환경정책 기초

- 〈해양생태문명건설실시방안 2015-2020〉(국가해양국, 2015.7)은 13.5 계획 기간 중 추진할 중점 임무를 계획하였는데, 이는 해양공간계획, 해양자원 절약이용, 해양생태계보호, 해양환경오염방제, 해양생태환경홍선, 자연자원자산 등록관리, 생태환경손해배상과 책임추궁, 생태보상 등임
- 〈생태문명체제개혁총체방안〉(중공중앙·국무원, 2015.9)에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9가지 제도(해양주체기능구, 해양매립총량제, 자연해안선보유율 관리, 휴어기·금어기 강화, 해역도서 유료 이용, 해역·무인도 사용권 양도, 오염물배출 총량관리, 해양감독제 보완) 추진을 밝힘
- 「해양환경보호법」(2016.11 개정)은 생태보호홍선, 생태보상, 해양주체 기능구, 오염물관리지표, 처벌조치 강화 등 반영
- 〈전국해양생태환경보호규획 2017-2020〉(국가해양국, 2018.2)은 복원과 정비, 개발과 이용, 생태보호, 모니터링과 평가, 오염통제, 리스크 예방 등 6대 임무를 내세움

○ 해양환경오염현황 및 통합환경관리

- 〈2018년 중국해양생태환경상황공보〉(생태환경부, 2019.5)에 의하면 해양환경질측정 1,694개 정점, 하천유입수질측정 194개소, 오수직접 배출 453개소, 해수욕장 36개소, 해양생물다양성 측정 1,705개 정점 등에서 해양환경을 모니터링

- 발해, 황해, 동해, 남해 등 해역별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동해가 4급미만이 22,110km²으로 가장 넓고 부영양화도 비교적 심한 편이며, 해양오염물질 유입원 중 하나인 강 하구 수질은 발해와 황해에서 4급 내지 5급 미만 위주이고 동해와 남해는 2급 내지 4급 위주여서 해역별 수질분포와 차이를 보이며, 수질오염의 주요 물질은 무기질소와 활성인산염
- 2018년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류가 80% 가량으로 가장 많으며 표층수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0.42개/m³로 조사됨
- 해양과 육상의 통합관리 정책수단으로서 오염물질의 연합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수립, 오염배출구 정리, '3선1단'과 환경평가 등을 통해 해수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
- 만장제(해역별 관리책임자 지정)는 2017년부터 1성 4시(저장성, 하이커우, 칭다오, 진황다오, 련윈강)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2018년 해양환경상황: 수질(좌), 부영양화 수준(우)〉

○ 해안선, 연안습지, 섬 등 보호정책

- 해양보호구는 2019년 기준 해양자연보호구, 해양특별보호구, 해양공원 등 271곳(12.4만km², 국가관할해역 4.1%)이 지정되어 있음. 2018년 해양보호구 모니터링 실시 결과, 산호 분포지는 다소 감소하고 갯줄풀(외래종)은 조사지역에 모두 분포
- <해양생태홍선제도 전면전립의견>(국가해양국, 2016.6)은 중점생태기능 구역, 생태민감구역 및 취약구역을 중점 대상으로 생태보호홍선을 획정하여 엄격한 계획관리를 추진. 특히 해양생태홍선 구역이 연해관리해역의 30% 이상, 자연해안선 35% 이상, 연안수질 우량등급 70% 수준을 달성하도록 목표 제시
- 「해안선보호·이용관리방법」(국가해양국, 2017.3)은 해안선 상황에 따라 엄격보호, 개발제한, 최적이용 유형을 구분하고, 자연해안선 점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2020년까지 전국자연해안선 보유율을 35% 이상으로 관리(랴오닝·허베이·장쑤·저장·광둥·광시≥35%, 텐진≥5%, 산둥≥40%, 상하이≥12%, 푸젠≥37%, 하이난≥55%)
- 바다매립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바다매립관리통제방법」(중양개혁전면 심화영도소조, 2016.12) 및 이와 관련된 <지도의견>과 <실시방안>(국가해양국, 2017.10)을 통해 2020년까지 바다매립 총량통제, 바다매립 감독조사 등 조치 제시
- <연안습지보호강화와 해양매립엄격관리에 관한 통지>(국무원, 2018.7)는 신규 매립을 엄격히 통제하고 해양불법매립을 조사해 처리하고 생태보호홍선과 연안습지를 보호할 것을 발표. 이에 자연자원부에서 위성자료를 이용해 15일 주기로 해안선 변화를 감시하는 등 불법매립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연안습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안습지보호관리방법」을 제정할 예정

- 도서지역 보호와 관련 <전국해안도서보호업무 13.5규획>(국가해양국, 2017.1)은 2020년까지 도서의 생태보호와 개발이용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자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전국생태도서암초공정 13.5규획>(국가해양국, 2016.10)은 2020년까지 100개 생태도서암초를 건설할 것을 계획

○ ‘발해종합처리공견전’ 실시

- 오염방지공견전 내 맑은물보위전의 일부로서 ‘발해종합처리공견전’ (2018.6)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발해종합처리공견전행동계획> (생태환경부 외, 2018.11)을 마련
- 발해 연안의 랴오닝, 허베이, 산둥, 텐진에서 3년간 종합관리를 추진하며, 오염원을 관리하여 강 하구의 5급 미만 유입수를 크게 감소시키고, 불법적인 직접 배출을 정리하고, 항구·선박·양식과 쓰레기로 인한 오염 방지를 실시하며, 2020년까지 우량수질(2급 이상) 비율 73%, 자연 해안선 35%, 연안습지정비 6,900ha 등을 목표로 함
- 2019년에는 발해만 연안 3,600km에서 위성과 드론, 조사인력 등을 동원해 오염수 배출구에 대한 저망식 조사를 완료함
- 발해만으로 흐르는 하천수 중 수질이 열악한 V급 미만 10곳은 2019년말에 2곳으로 줄었음

○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

- 비도로이동오염원 중 선박의 배출은 이산화황 98.3%(58.5만톤), NOx 29.2%(151.1만톤), 미세먼지 31.5%(10.9만톤)에 달함(‘2018년 중국 이동원환경관리연보’)
- 중국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이행을 위한 선박배출통제구역 지정 등 배출규제조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가입(2019년 1월 시행) 관련 「선박평형수와 침적물 관리 감독 관리방법(시행)」(해사국, 2019.1)으로 선박평형수 교체로 인한 해양생태계교란 대응 등 조치를 시행

- 〈선박·항구오염방지전문행동실시방안 2015-2020〉(교통부, 2015.8)은 2020년까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에 대한 저감목표를 설정
- 〈주삼각, 장삼각, 환발해(징진지)수역 선박배출통제구역실시방안〉(교통부, 2015.12)은 이들 3개 수역에 선박배출통제구역을 설정하였고, 〈선박 대기오염물질배출통제구역실시방안〉(교통부, 2018.11)은 배출통제구역을 전국 12해리내 해역과 일부 내하(장강주류와 서강주류)로 확대하고 일정 기준 연료(해양선박은 2019년부터 황함량 0.5% 이하, 내해선박은 2020년부터 황함량 0.1% 이하)를 사용하며 항구에 접안한 선박에 전기공급을 확대하기로 함
- 선박 유래 수질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막기 위하여 〈선박수질오염물 전이처리연합감독관리제도건립 지도의견〉(교통부 외, 2019.1), 〈선박 수질오염물배출제어표준〉(GBT3552-2018)에 따라 폐유, 기름오수, 생활오수, 화학물질,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후 외부에서 처리

7

농업·농촌환경

- 「축산규모양식오염방지조례」(국무원, 2014.1)
 - 제정 배경: 축산양식업의 COD, 질소, 인 등 배출량이 전국배출량의 41.9%, 21.7%, 37.7%에 달하고 농업오염의 96%, 38%, 65%에 달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전국오염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고 있음
 -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목축업발전계획을 편제하며, 계획에는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해 축산양식오염을 방지하며, 과학적으로 축산양식의 품종, 규모와 총량을 정함(제9조)
 - 축산양식장(소구) 건설을 금지하는 지역(제11조): 음용수수원보호구, 풍경명승구, 자연보호구의 핵심구·완충구, 도농거주구·문화교육과학연구 등 인구집중구역, 법률법규가 정한 기타 축산금지구역
- 농업농촌오염방지(〈물오염방지행동계획〉 중 일부, 2015.4)
 - 축산장 관리(농업부 주관, 환경보호부 참여): 축산금지구역(금양구) 확정, 금양구내 양식장 철거·이주, 양식장 규모화 및 오염방지설비 설치, 소규모 양식장 밀집구역의 분뇨 수거 및 집중처리
 - 면오염원 관리(농업부 주관, 발개위 등 6부처 참여): 농업면오염원종합방지방안 제정, 저독성·저잔류농약사용 보조, 고표준 농지 건설, 생태오수처리시설 설치
 - 경작 구조조정(농업부·수리부 주관, 발개위·국토자원부 참여): 용수과다 이용 방지, 가물내성작물과 경제림 도입 등, 2018년까지 관개면적 3,300만무(亩) 정비, 용수 37억톤 절약

- 농촌환경종합정비(환경보호부 주관, 주택부·수리부·농업부 참여): 오수 처리체계, 하도준설, 2020년까지 마을 13만곳 정비

○ <농업면오염방지공견전 실시의견>(농업부, 2015.4)

- 주요목표: 2020년까지 농업면오염 추세 억제, “1개 제어”(농업용수총량), “2개 감소”(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감소, 토양측정시비기술적용 90% 이상, 병해충친환경구제 30% 이상), “3개 기본”(축산분변·농작물짚대·농업비닐 자원화 이용, 농업폐기물 회수이용, 양식장 규모화 75% 이상, 짚대이용율 85% 이상, 농업비닐회수 80% 이상), 농업면오염 모니터링망 운영 등

○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2016.5) 중 농업농촌 관련 사항

- 농업용지분류관리, 농업생산환경안전: 농업용토양환경질량 분류, 보호역량 강화, 안전이용 추진, 엄격한 통제, 숲·초지·공원 토양환경관리
- 오염원 감시관리, 토양오염예방: 농업오염 통제, 농사비닐회수이용, 축산양식오염방지, 관개수 수질관리, 생활오수 감소

○ <물오염방지행동계획 실시정황 심사규정(시행)>(환경보호부 외, 2016.12) 중 농업농촌 관련 사항

- 심사규정(시행)에서 2가지 심사(물환경질, 물오염방지중점업무 추진상황)의 추진방안, 실적지표와 가중치를 제시
- 물오염방지중점업무 중 농업농촌오염방지 가중치가 15/100점(축산양식오염방지 10, 농촌환경종합정비 5)
- 축산양식오염방지 업무목표: 2017년까지 금양구 정비, 징진지·장삼각·주삼각은 1년 앞서 완료. 2020년까지 규모양식장(소구)에 폐기물처리설비 설치율 75% 이상

- 농촌환경종합정비 업무목표: 생활오수처리율 60% 이상, 생활쓰레기 무해화처리율 70% 이상, 축산분뇨종합이용율 70% 이상, 음용수위생 합격을 90% 이상

○ 농업농촌오염처리공견전(오염방지공견전 중 맑은물보위전의 일부, 2018.6)

- 주요 목표: 2020년까지 농촌거주환경을 확실히 개선. 90% 정도의 마을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위생화장실을 85% 보급하며, 생활오수배출과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이고 농업용비닐 등 폐기물을 회수. 전국의 축산분뇨종합이용율은 75% 이상, 규모양식장의 분뇨처리 시설은 95% 이상

○ <농업농촌오염처리공견전 행동계획>(생태환경부·농업농촌부 2018.11)

- 주요 목표: “1개 보호, 2개 처리, 3개 저감, 4개 제고”. ‘1개 보호’는 농촌 음용수원지, 2개 처리는 농촌생활오수와 쓰레기, 3개 저감은 화학비료사용량, 농약사용량 및 농업용수량, 4개 제고는 농업면오염에 따른 수질기준 미달 수체, 농업폐기물 종합이용률, 환경모니터링 및 관리능력, 농촌주민 참여도
-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첫째, 농촌 음용수원 보호 강화이며,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2020년까지 급수인구 만 명 또는 일일 급수 천 톤 이상(‘천톤만인’)의 음용수원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보호구역을 획정. 둘째, 농촌 생활쓰레기와 오수처리의 가속화이며, 2020년까지 동부 지역, 중서부지역 등 기반여건이 갖춰진 지역에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전면 구축하여 생활오수처리율을 제고. 셋째, 축산업 오염 해결이며, 2020년까지 전국 가축분뇨 종합이용률 75% 이상, 축산장 분뇨오염처리시설 설치율 95% 이상 달성. 넷째, 재식농업 오염문제 해결이며,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농작물 화학농약 사용량 저감, 짚 종합이용률 75% 이상 달성, 양식장 분뇨처리시설 설치율 98% 달성 등

8

환경보호재정

○ 생태환경보호재정의 관리와 개혁

- 〈오염방지공견전 재정지원과 생태문명건설신속추진 의견 2019-2020〉(재정부, 2019.11)으로 재정관리와 지원 강화
- 생태보상기제를 통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16~2018년 중 1,918억 위안(연평균 12.3% 증가)을 배치하였고, 〈유역상하류형적생태보상기제건설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재정부 외, 2016.12)은 2020년까지 지방정부간 하천 상하류에서 생태보상기제 건립을 요구
- 향후 국무원은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자금지출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사무권한과 지출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연자원과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주체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여 환경투자를 늘리고, 환경질 개선에 맞추어 예산집행효과를 관리할 계획임

○ 생태환경보호자금 2016~2018년 지출 총계

- 전국재정 중 생태환경보호 관련 지출은 2016~2018년 누계 24,510억 위안, 연평균 14.8% 성장(전체 성장폭보다 6.4% 높음), 전체 재정지출 대비 3.7%에서 4.2%로 성장
- 생태환경보호 지출 중에서 중앙재정은 10,764억위안

○ 중앙재정 중에서 2016~2018년 환경보호 분야별 지출

- 푸른하늘보위전: 대기오염방지 474억위안, 공업기업구조조정 579억위안, 에너지절약배출절감 1,024억위안

- 물오염방지행동계획: 물오염방지 396억위안, 해도와 해역 보호 67억위안, 도시관망과 오수처리보조 50억위안
-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토양오염방지 195억위안, 농업비닐처리와 한지 작물농업기술 30억위안
- 농촌환경종합처리: 농촌환경정비 180억위안, 농업자원과 생태보호보조 48억위안
- 생태보호: 중점생태보호수복 260억위안, 임업전환 2,636억위안

○ 2019년 재정 수치

- 에너지절약환경보호지출은 7,444억 위안(전년 대비 18.2% 증가)이며, 그 중 오염감소와 재생가능에너지 지출은 각각 48.6%, 38.3% 증가
- 2019년에 중국이 감세정책을 실시하여 세수가 전년 대비 7.3%가 감소 하였으나 생태환경 관련 세수는 크게 늘었으며, 자원세는 1,822억위안 (전년 대비 11.8% 증가), 환경보호세는 221억위안(전년 대비 46.1% 증가)을 징수



Ⅲ. 주제별 환경정책

1

장강경제벨트 환경보호

- 환경보호를 내세운 장강경제벨트발전전략 추진
 - 장강경제벨트는 11개 성(시)에 국토 21%, 인구·경제 40%를 차지하나, 전국 폐수 40%이상 배출과 급속한 습지 소실 등 생태환경 악화, 수로운송 병목, 구역간 불균형발전 및 산업전환 곤란 같은 중대한 문제들에 봉착
 - 시진핑(2016.1)은 장강경제벨트에 대해 “생태우선 녹색발전의 길로 가고, 크게 보호하고 개발에는 기대지 않는다”고 밝힘
 - <장강경제벨트발전기획강요>(중공중앙정치국, 2016.9)을 통해 장강경제 벨트발전을 국가전략으로 배치
 - 최근 발표된 <장강삼각주구역일체발전기획강요>(중공중앙·국무원, 2019.12)는 장삼각의 고품질, 일체화 발전을 실현하자는 전략이며, 환경분야는 주요 오염물질의 통합관리를 추진



<장강경제벨트 개요도>

○ 장강경제벨트의 주요 환경정책

- <13차 5개년 생태환경보호규획>(국무원, 2016.11)
 - (장강경제벨트 대보호) 보호우선 원칙을 선언, 상류는 생태환경보호와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 중류는 강과 호수의 연결성 확보 및 수질안전, 하류는 생태환경회복과 오염처리, 장강 일대의 하천유지용수 보장, 장강 연안에서 개발 제한, 지방간 수질보상제도 추진
 - (장강유역 및 호수 수질관리) 장강유역은 물오염방지규획, 상하류 정부간 협조기제, 수생생물다양성 보호, 선박·항구 오염방지, 총인오염종합처리. 태호 등 주요 호수는 남조류 대발생 방지, 음용수안전 확보, 총인량 제어, 도시 오수 및 농업면오염 중점 통제, 수생태 회복
- <장강경제벨트생태환경보호규획>(환경보호부 외, 2017.7)
 - (목표) 2020년까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며, 2030년까지 환경을 전면 개선
 - (조치) 수자원 이용 규제, 생태보호, 수질오염방지, 거주환경개선, 환경오염사고대응 등
- <중점유역 물오염방지규획 2016-2020>(환경보호부, 2017.10)
 - (장강유역 수질개선 목표) 3등급 이상 비율 76% 이상, 5등급 미만 비율 3% 이하
 - 수생태관리구 341개소와 물환경관리구 1,784개소를 정함
- 장강보호수복공견전행동계획(생태환경부·발개위, 2018.12)
 - (지도사상) 장강 생태환경개선을 위해 오염방지·생태보호에서 힘쓰고, 오염처리·생태수복·수자원보호를 추진하고, 공업·농업·생활·항운오염을 통제
 - (공간관리) 산·물·숲·밭·호수·초원 통합 관리, 3선1단 편제
 - (협동관리) 정부 통솔, 기업 처리, 시장 추동, 공중 참여

- (업무목표) 습지생태기능 보호, 생태용수 보장, 환경위해 억제, 환경질 개선. 2020년말까지 우량수질 85% 이상, 사용불가수질 2% 미만. 장강경제대 지급 이상 도시는 흑악취수체 90% 이상 제거, 집중식 음용수원 우량수질 97% 이상
- (주요 조치) 생태보호홍선획정, 배출구조사정비, 공업오염처리강화, 농촌거주환경개선, 농업면오염원억제, 환경기초시설보호, 음용수수질 안전, 선박·항구오염관리, 수자원할당최적화, 생태용수보장, 생태훼손 행위엄단 등

○ 장강유역환경관리 주요 정책수단

- 장강일대 국토공간계획
 - <생태보호홍선 획정 및 엄수에 관한 약간의 의견>(중공중앙·국무원, 2017.2)에 따라 2017년까지 장강경제벨트의 생태보호홍선을 획정하고, 홍선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금지
 - 장강일대 11개 성(시)에 대한 3선1단 편제가 2019년말까지 생태환경부 심의를 통과했고, 발표 후 구획관리체계 건립
- 하장제·호장제를 통한 유역관리
 - 지방에서 창의·시행되고 중앙정부가 <하장제전면추진 의견>(중공중앙·국무원, 2016.12), <호수에 호장제실시 지도의견>(중공중앙·국무원, 2017.11)으로 받아들임
 - 2018년말 기준 하장 30여만명, 호장 2.4만명이 지정되었으며, 각 지방정부 당위원회와 정부책임자가 하장·호장이 되어 당해 유역을 통합관리함
- 오염원 조사·정비(생태환경부·수리부 등)
 - (장강유역 배출구 관리) 생태환경부에서 2019년에 장강 9천km 연안에서 배출구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조사·측정·추적·정리 등 4단계로 처리

- (총인오염 제어) '3린 조사정리'(인광, 인화공업체, 인석고창고)를 7개 성에서 2년간 실시하고 281개 업체를 정비(2019년말 172곳 완료)하고 있으며, 주요 지류의 총인농도가 2016~2019년 중 40% 가까이 감소하였음
- (난개발 정비) '4란 정리'(무단 점유·채취·적체·건설)에 따라 2018~2019년에 유역면적 1천km² 이상 2,221개 하천, 1km² 이상 2,865개 호수에서 5만6천여건 정리
- (수원지 정비) '수원지보호공건전' 일환으로 장강경제벨트 및 기타 지역에서 현급이상 수원지에서 환경문제 정리사업을 시행, 2018년에 31개성 1,586곳 6천2백여건 정리
- (선박·부두 관리) 폐유류, 오수, 쓰레기 등으로 인한 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선박내 수집처리 의무화, 부두오염방지시설 설치, 위험물부두 증설 금지 등 시행
- 생활하수 및 공단폐수 관리(생태환경부)
 - 오수처리장에 대한 배출허가증 발급을 시행하여 장강경제벨트에서 4,342장 발급(2019.8 발급완료)
 - 전국 성급 이상 공단 97%에 오수처리시설과 자동감시장치가 설치되었으나, 2019년에 오수처리시설 관리감독 결과 38곳 중 28곳에서 문제가 확인되어 조치를 진행
- 축산폐수관리(농업농촌부)
 - 농업오염원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 따라 축금규모 양식방지조례, 물오염방지행동계획 등에서 축산금지구역 획정, 소규모 축산장 정비 및 규모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시행
- 생태보상(재정부 외)
 - 중앙재정자금을 장강유역 생태보상사업에 투입(2018년 50억위안)하여 큰 성과를 거두면서 생태보상을 확대

- 주요 하천 상하류(예, 장시-후난간 渌水구역)에서 수질측정치를 기준으로 지방정부간 자금을 교류하거나 습지·철새보호 및 경작피해보상(예, 장시 포양호) 등 여러 곳에서 시행중이며, 향후 전 구역으로 확대해나갈 전망
- 모래채취·수급 관리(수리부)
 - 장강 환경보호와 불법단속 등으로 인해 모래 수급불안정 및 가격 상승이 발생함에 따라 <하천모래자원의 합리개발이용을 위한 신속한 계획편제업무 통지>(수리부, 2019.9)는 지역별 채취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
- 불법행위 단속
 - <녹색발전·협업보장 복무보장 장강경제벨트발전 김찰백서 2019>(최고인민검찰원, 2020.1)에 따르면 2019년 환경자원범죄안전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서 4,336건에 7,084인 구속, 12,504건 22,310인에 소송 제기. 유형별로는 불법채굴 12.6%, 환경오염 6.9%, 야생동물불법매매 6.3%, 농지불법점용 11.5%, 불법벌목 22.2%, 불법어로 18.2% 등
- 고발영상 제작·방영
 - 생태환경부·CCTV가 2018년부터 매년 '장강경제벨트 생태환경 고발영상'을 제작해 한정부총리 등 지도자들에게 방영 (2018.12 제1편은 오수배출, 불법개발, 폐기물 등 163개 문제, 2019.11 제2편은 152개 엄중위반문제 수록)
 - 중앙생태환경보호감독사무실에서 고발영상 환경문제를 정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고발영상을 별도 제작하여 환경감독에 사용하는 추세



〈폐수처리장 폐수를 차량 수거해 우수관에 방류(2018년 고발영상)〉

- 수생생물보호를 위해 10년간 어획금지 등 조치
 - 〈장강수생생물보호업무 의견〉(국무원, 2018.9)에 따라 2020년까지 어획금지 등 수생생물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
 - 장강유역 주요 어류자원은 1950년대 대비 90%이상 줄었으며, 전국 수산양식생산 6천만톤에 비해 장강의 포획량이 10만톤에 못미쳐서 어획금지를 해도 식량공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장강 어류자원 보호에 나서겠다고 판단
 - 2017~2018년 중 장강의 어류 중 314종을 채집했으나 미채집이 134종으로 장강어류 총수의 1/3 가까이 됨
 - 장강유역 중점수역에서 연중 어획금지, 보호구 건설, 수생생물다양성 회복 등 조치를 2020년까지 준비·시행하여 2035년까지 장강유역 생태환경이 확실히 개선되고 서식지를 전면 보호한다는 목표
 - 〈장강유역중점수역 어획금지와 보상제도건립 실시방안〉(농업농촌부 외, 2019.1)

- (어획금지) 장강수생생물보호구는 2019년말 이전에 조치하고 앞으로 전면 금지, 장강주류와 주요 지류는 2020년말 이전에 조치(10년 시행후 평가), 강 주변 대형호수(포양호, 동정호 등)에서 보호구 이외 수역은 성급 인민정부에서 2020년말 이전에 어획금지구역을 정하여 조치
 - (대상 및 보상기제) 10개성에 어선 11만척과 어민 30만명이 관련되며, 중앙 및 지방재정으로 일회성 보조(선박보상, 포획증회수, 격려금), 과도기 생활보조, 사회보장지원, 직업전환훈련 등을 시행
- 수생생물보호조치 집행 동향
- 182개 수생생물보호구 전면 어획금지, 어민 2.1만명은 사전에 어획 중단. 중앙재정으로 이미 72억위안을 집행하여 각지에서 어민의 직업전환을 도움(인민일보, 2019.11)
 - 지방정부가 어획금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선박보조금이 적고 선박크기를 고려하지 않는 등 어려움 발생(중국신문주간, 2019.12.10.)



〈장강 어업 쇠퇴와 멸종되는 생물들(좌), 어업을 그만두는 어민들(우)〉

○ 「장강보호법」 입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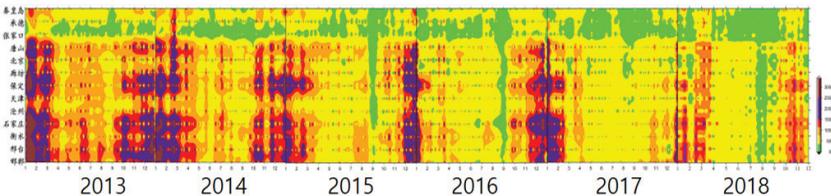
- 오염방지공견전(2018.6)에서 장강환경보호 법률 제정을 제안하였고, 전인대에서 2019년에 「장강보호법」 입법업무를 추진중
- (전인대 상무위 1차 심의 초안, 2019.12) 총칙, 기본제도·조치, 국토 공간용도관리, 생태환경수복, 물환경보호·이용, 녹색발전추진, 법률실시·감독, 법률책임, 부칙 등 9장 84조
- (입법 이유) 국가생태안전 요구에 따르며, 환경·생태·생물다양성 보호,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녹색발전과 고품질발전 등이 목표
- (행정적 범위) 19개 성·자치구·직할시를 포괄
- (주요 정책수단 법제화) 어획금지, 수생생물보전지수 평가체계, 장강 유역통합관리체계, 생태보상, 오염물질총량관리, 건설용지총량관리 등 포함

2

추동계 대기오염관리

○ 추동계 대기오염관리 추진 배경

-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대기10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던 2016년말~2017년 초에 9일 연속 중오염(AQI 201 이상)이 발생하였고, 그해 겨울 대기질이 전년도 겨울보다 악화
- 이에 2017년에 추동계 대기질 관리제도 도입을 준비해서 징진지지역 부터 관리 착수
- 또한 연중 중오염날씨 90%가 추동계에 발생하여서 집중적으로 관리 필요



〈2013년 이후 주요 도시별 중오염날씨 발생 현황〉

○ 중점지역에서 추동계 대기오염방지 행동방안 수립

- 중앙정부(생태환경부 등)는 중점구역(징진지 및 주변지구, 편웨이평원, 장삼각지구)에 대한 행동방안을 마련
- 수치목표(지역별 평균)는 징진지 및 주변지구에서 동기대비 PM2.5 4%, 중오염날씨 6% 감소, 편웨이평원에서 동기대비 PM2.5 3%, 중오염날씨 3% 감소, 장삼각지구에서 동기대비 PM2.5 2%, 중오염날씨 2% 감소이며, 각 중점구역의 도시별 목표치는 도시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성급 인민정부는 추동계대기오염종합관리행동방안, 중점지역일 경우 생태환경부의 중점지역 행동방안에 대한 실시세칙 등을 작성하여 시급, 현급 인민정부에 배포
- 시급 인민정부(중점구역 중 징진지 및 편웨이평원 39개 도시)는 도시별 1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징진지 및 주변지구 2019~2020년 추동계 감축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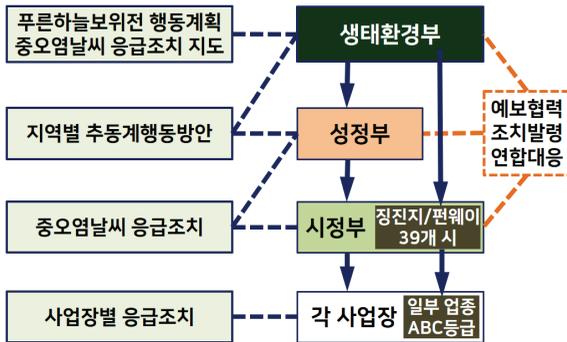
징진지 도시(일부)	감축목표(전년동기대비)	
	PM2.5농도(%)	중오염날씨일수(일)
베이징	0.0	지속 개선
톈진	1.0	1
스자좡	5.5	2
싱타이	6.0	3
바오딩	4.0	2
량팡	1.0	1
타이위안	4.5	1
지난	4.5	1
지닝	4.0	지속 개선
더저우	3.0	1
정저우	6.0	2
카이펑	6.0	3
안양	6.5	3

○ 징진지 및 주변지구 2019~2020 추동계 행동방안 주요 내용

- PM2.5 4%, 중오염날씨 6% 감소를 목표로 하여 2018~2019 목표 (PM2.5 3%와 중오염일수 3% 감소)에 비해 강화
- 10대 임무: 산업구조조정, 에너지구조조정, 운수구조조정, 토지사용 구조조정, 디젤화물처리, 공업보일러처리, VOCs종합처리, 오염이 심한 날씨에 대처, 공업기업의 비절정기 생산 및 운수, 능력건설

○ 중점구역별 추동계 행동방안(2017년부터 10월~익년 3월)

- 징진지지역(2+26개 도시)에서 2017년말 시범 시행하였으며, 2018년말에 편웨이평원(11개 도시)과 장삼각지역에 확대 시행
- <징진지 및 주변지구 추동계 대기오염종합처리 공견전 행동방안>에서 2019~2020 추동계 주요 지표는 전년대비 PM2.5 평균농도 4% 감축 (18~19년 3% 감축), 중오염일수 6% 감축
- 생태환경부 부서, 소속 연구기관들이 징진지 및 편웨이평원 39개 도시 대기관리에 직접 협력하는 체계 구축



<중오염날씨 응급조치 추진체계>

○ 도시별 대기관리대책 추진사례(베이징시)

- 도시내 차량이 많고 공업배출이 적은 것을 감안해 차량 전동화, 택시 운영연한 단축, 고배출차량 운행제한·도태 등 시행
- 추동계에는 주변 도시들과 연합해 대책을 시행하고 주변 허베이성에서 석탄사용을 줄이는 것 등이 대기질 개선에 효과
- 고농도 응급조치는 2012년 첫 수립, 2018년에 제5판 간행. 경보수준별 3단계 대책을 시행하며, 주로 차량·공사장·기업생산 등에서 대책이 이행되고, 홍색경보시 차량은 '국5' 등급까지 2부제(공공기관은 추가로 30% 운행금지)

○ 도시별 추동계대책 추진사례(산둥성 지닝시)

- 산둥성 남서부 인구 850만, 면적 1.1만km²의 지급시이며, 주요 석탄 생산지이고 발전소가 많은 자원형 경제구조이자 내륙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질 관리에 비교적 불리한 상황
- 2013년부터 본격적 대기개선조치, 2015년 발전소 탈황 착수, 2018년에는 전년대비 PM2.5 28.8% 감소 등 실적을 보임
- 「지닝시 대기오염방지조례」를 두고 시정부 심수개 부문이 대기관리 지휘부를 조직해 대기오염방지대책을 통합 추진하며, 각 부서별로 정부지침을 보완한 상세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
- 시 전역 마을마다(156개소) 대기질 측정, 관리구역(918개 구역당 10km² 내외) 분획 및 구역별 순시원 배치, 사업장별 CCTV설치(4천여개) 의무화로 무단적치와 비산배출 감독, 추동계 예경보시 5,500개 기업에서 사전 승인된 응급조치 시행, 모든 자료는 스마트환경보호관측센터에서 온라인 취합 관리



〈산둥성 지닝시 대기관리 현장〉

3

동물 전염병에 따른 생물안전 대처

- 신종 병원체, 유전자편집 등 대비 생물안전 강화 노력
 - 외래종이나 병원체의 침입과 전파, 생명공학기술 발달, 무분별한 인체 유전자원 이용, 생물무기 제조 및 테러 위험 등에 대비하여 2019년 전인대에서 「생물안전법」 입법에 착수
 - 특히 2000년대초 사스바이러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는 중국 인민의 건강과 사회·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축산오염규제가 돈육수급에 큰 영향
 - 2015년부터 축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축산금지구역 획정, 양돈장 대형화 등 양돈산업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겹치면서 생돈사육시설이 부족해짐
 - ASF 발병에 초기대응 미흡, 주요 생산지(북방)에서 소비지(남방)로 생돈을 운송해 도축하는 구조 등으로 인해 ASF가 남쪽으로 급격히 전파되면서 생돈사육이 급감하고 돈육가격 폭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및 생돈 수급 관련 조치
 - ASF 발생시 3km이내 살처분, 성외 이동금지, <생돈과 상품 운반감독 관리강화 통지>(농업농촌부, 2018.8) 발표, 양돈장 봉쇄 및 진출입관리, 감염돼지고기 도축·판매금지, 감염돼지 무해화처리(매립·소각·약품처리) 등 대책 시행
 - 돈육가격이 급상승하면서 2019년말 국무원 관계 부문이 <생돈생산회복 발전가속 3년 행동방안>(농업농촌부, 2019.12) 등 여러 조치를 발표

하였고, 이에 따라 획일적 축산규제 금지, 축산용지 공급, 살처분시 보조금 조기지원, 대형양돈장 설치 규제완화, 도축장 배치 합리화 등 추진

○ ASF발병 상황 호전, 생돈사육 회복 추세

- 돼지사육은 동북3성, 산둥, 허난, 산시 등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추세(2019년 후반기에 생돈사육량 증가)
- 돈육 공급능력은 2년 정도에 회복될 것이나 ASF 재발 같은 돌발요인이 변수이며, 돈육소비율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멧돼지 ASF 모니터링 및 관리

- 2018년 8월 랴오닝에서 ASF 발병에 따라 국가임업초원국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및 통제업무 긴급통지>를 각 성·자치구·직할시 임업청(국) 및 관계기관에 배포
- 통지의 주요 내용은 야외순찰 강화, 멧돼지와 교잡돼지 사육관리철저, 이상사체 발견시 보고, 표본채취 및 진단실험 등
- 이후 2018년말~2019년초 기간 중 야생멧돼지, 사육멧돼지에서 수차례 ASF가 보고되었으나, ASF가 급격히 남방으로 퍼진 확산속도로 볼 때 멧돼지를 확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 대응

- 2020년 1월에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유래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지면서 당중앙에서 <전염병대응영도소조>를 조직해 적극 대응
- 시장감독총국 등(2020.1)에서는 <야생동물시장감독관리강화와 전염병통제 업무적극추진 긴급통지>, <야생동물교역금지 공고> 등에 따라 야생동물 판매와 식용을 금지하였고, 공안과 검찰에서 관련 단속을 적극 추진

- 생태환경부(2020.1)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의료폐기물긴급 처치관리와 기술지침(시행)>을 발표

○ 병원체 전염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식용 규제

- 사스, 에볼라, 니파, 에이즈, 메르스, 헨드라, 지카 등 병원체로 인한 신규 전염병 70%는 야생동물에서 유래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도 박쥐에서 유래하고 중간숙주를 거쳐 전파된 것으로 추정
- 보호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식용규제가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전문가들은 「야생동물보호법」 등 관계법규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 식용을 전면금지하도록 요청하였고, 전인대상무위(2020.2)는 <야생동물불법 교역전면금지, 야생동물남식습관제거, 인민군중생명건강철저보장에 관한 결정>을 발표



<병원체 숙주로서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야생동물 사례>

4

기업의 오염배출과 규제

○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와 책임

- 「환경보호법」에서 기업의 환경관련 조항이 대단히 많으며, 기업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의무와 행정·형사·민사 책임을 가짐
- 환경보호 의무는 현장조사협조, 청정생산,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저감, 오염모니터링, 적법한 오염물질배출, 오염물질배출비, 배출허가증, 환경문제시 응급조치, 정보공개 등임
- 행정책임은 일일연속처벌(누적처벌), 배출허가문제시 조업제한 내지 휴업, 건설중단 및 과징금, 환경정보미공개시 처벌, 행정구류 등이 있음
- 형사책임은 「형법」상 환경오염죄가 있는데, 심각한 환경오염 초래시 3년이하 징역 및 벌금, 특별히 심각한 결과 초래시 3~7년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함. 특히 위험폐기물 불법 배출, 중금속 환경오염, 자동 모니터링 자료조작 내지 시설작동 교란, 오염방지시설 운영 축소 등 행위는 법원·검찰의 환경오염형사사건 해석기준에 따라 엄격히 처벌
- 민사책임은 민사권리침해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회단체 내지 검찰이 제기한 환경공익소송에 따라 배상함

○ 배출허가증 발급과 오염원 자료구축으로 환경관리 강화

- <오염물배출관리허가제실시방안>(국무원, 2016.11), <고정오염원배출허가분류관리명단(2017년판)>(환경보호부, 2017.6), <오염배출허가관리방법(시행)>(환경보호부, 2018.1)에 따라 33개 업종 및 오염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오염배출허가증을 심사발급하며, 이후 이들 대상 기업은 허가증이 있어야만 배출할 수 있게 됨

- 배출허가증 발급은 기업이 오염배출 책임을 지고 기술적 규범에 따라 배출하는 것이며, 지방정부는 고정오염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효과
- <오염배출허가관리방법(시행)>에 따르면 법규에 따른 건설금지구역(생태보호홍선, 수원보호구 등)과 산업정책으로 도태되는 업종 등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음
- <오염원코딩규칙(시행)>(HJ608-2011)(환경보호부, 2011.3)에 따르면 대기와 물 관련 배출단위, 배출허가, 생산시설, 오염처리시설, 배출구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는 배출허가증 발급번호(22자리)에 적용됨
- 2019년에는 장강경제벨트와 환발해연안 도시의 오수처리장에 대한 배출허가증 4,860장을 포함하여 중점구역 고정오염원 7.6만개 업체에 대해 배출허가증을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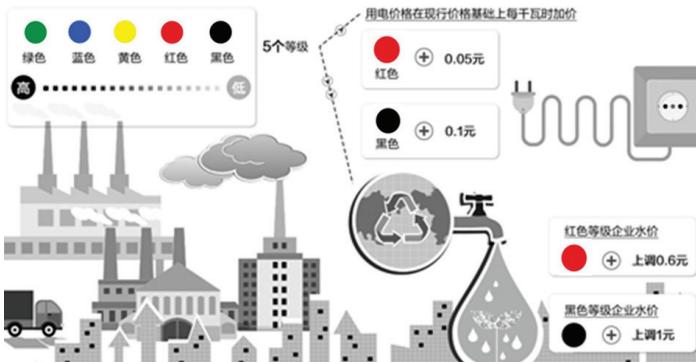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발급>

○ 기업별 환경신용평가

- 사회신용체계건설의 일환으로 환경신용을 평가하며 <기업환경신용평가방법(시행)>(환경보호부 등, 2014.12), <기업환경신용체계건설에 관한 지도의견>(환경보호부·발개위, 2015.11) 등 문건에 따라 지방정부(성·시·현)가 오염배출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를 시행함

- 장쑤성은 오염방지책임·환경관리감독·사회영향 관련 21개 지표를 이용해 기업(2017년 3만곳) 환경보호수준을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 및 공개하고, 신용이 낮은 등급(홍색·흑색)에는 시장진입과 용자 제한, 우대 조치 취소 등을 취함
- 구이저우성은 4개 등급(성실·양호·경고·불량)으로 분류하며, 2016년부터 571개 기업 등이 블랙리스트에 수록되어 관리됨



〈장쑤성 기업의 환경신용평가와 차별조치〉

○ 환경오염사건 발생시 손해배상

-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개혁방안〉(중공중앙·국무원, 2018.1)은 정부가 원고가 되는 소송제도. 2015년 시범방안에 이어 발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2020년까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생태환경부(2019.11)에 의하면 각지에서 600여건이 다루어졌고 200여건이 이미 판결되어 관계 업체에서 적지 않은 배상금을 물고 있음
- 환경공익소송(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환경보호법에 근거)은 사회단체나 검찰기관이 원고가 되는 소송제도. 최고인민검찰원 집계에 의하면 2017.7~2019.8 기간 중 입안된 204,446건 중에서 환경자원영역 안건이

112,250건(54.9%)으로 가장 많고, 대체로 소송전 행정기관에 보내 처리되나 미처리시 공익소송(민사 또는 검찰의 소송제기)으로 넘겨져 소송이 진행됨

○ 정부의 기업규제 합리화

- 최근 오염관리규제가 급격히 추진되면서 형식적, 비합리적 환경보호 조치가 정부의 이미지와 공신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축소시킨다는 인식하에 법집행에 있어 생태환경부에서 획일적 조치를 연중 내내 강하게 비판
- 「영업환경우화(최적화)조례」(국무원, 2020.1) 제59조는 보편적 생산 정지·영업정지 조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획일적 환경규제집행은 위법으로 판정되어 정부가 업체에게 손실배상을 해야 할 수 있음
- <생태환경보호종합행정집법개혁심화 지도의견>(중공중앙·국무원, 2018.12)은 팡관푸(放管服)(권한이양과 시장자유화)개혁을 위해 평소 자동측정자료, 위성자료, 기업환경신용자료 등을 이용해 기업을 비현장 관리하고 그 대신 ‘수시 표본조사 후 사회에 공개’(双随机一公开)하는 방식을 추진
- 최근 환경영향평가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팡관푸개혁 업무분담회의(국무원, 2019.8), <건설사업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감독관리방법>(생태환경부, 2019.9)은 평가서 작성 위탁, 심의기간 단축, 환경영향이 없는 활동의 평가면제 등을 추진

5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책과 시행 동향

- <생활쓰레기분류제도실시방안>(발개위·주건부, 2017.3)에 따라 46개 분리수거 의무화 도시의 쓰레기회수이용율 35% 이상 목표 설정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본격 착수
- 2018년 중국민생조사(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 따르면, 46개 중점도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류하는 가정은 38.3%로서 전년도에 비해 11.4%가 높아짐
- 상하이시는 2019년 7월 「상하이시 생활쓰레기관리조례」 실시로 관리 구역, 관리대상, 위반시 처벌 등을 강화하였으며, 베이징시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 5월 시행
- 2019년말 기준, 46개 도시의 쓰레기분류시행율은 53.9%, 상하이·샤먼·닝보·광저우 등 14개 도시의 시행율은 70% 이상

○ 생활쓰레기 분류방식 표준화

- <생활쓰레기분류표지>를 개정(주건부, 2019.11)하여 지방정부의 분류 방식이 다른데서 오는 혼란을 바로 잡음
- 재활용품, 유해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기타쓰레기로 나누며, 기존 분류 기호 중 일부(대형, 가연성, 퇴비용, 병·캔)는 없앴

4个大类和11个小类



可回收物
Recyclable



有害垃圾
Hazardous Waste



厨余垃圾
Food Was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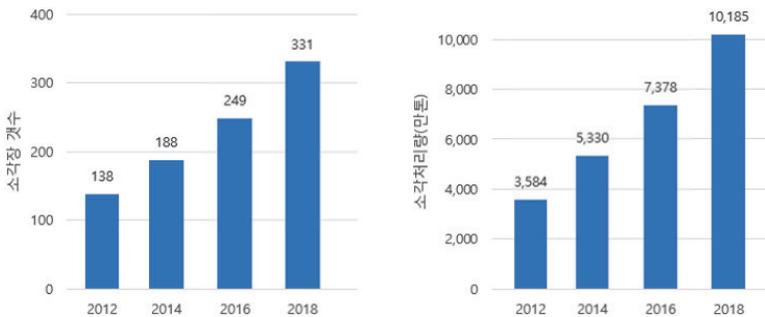


其他垃圾
Residual Waste

<생활쓰레기 분류 표준>

○ 분리수거 후 처리시설 설비투자과 시장 추세

- 분리수거된 쓰레기는 재생자원기업에서 재활용, 유해쓰레기처리장에서 유해쓰레기 처리, 주방쓰레기처리장에서 비료 또는 가스 생산, 기타 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발전 등으로 처리됨
- 2018년 생활쓰레기 처리량 2.3억톤 중에서 위생매립 51.9%, 소각 45.1%(10,185만톤), 기타 3.0%
- 소각장은 2012년 138개소에서 2018년 331개소로 늘어났으며, 소각 설비량은 2017년 29.8만톤/일에서 2020년 59.1만톤/일로 증설을 계획하는 등 소각장발전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
- 소각로는 <생활쓰레기소각오염통계표준>(GB18485-2014)에 따라 설치하고 <생활쓰레기소각발전소 자동관측자료응용관리규정>(생태환경부, 2019.12)에 따라 배출하도록 조치
- 전체적인 폐기물산업 수익은 2016년 3,967.3억위안, 2018년 4,600억 위안 가량이며, 2022년에 6,400억위안(2018~2022년 연평균 8.61% 증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쓰레기 소각설비 증설 동향: 소각장 갯수(좌), 소각처리량(우)〉

6

환경모니터링 및 정보화

○ 환경 모니터링 관련 정책기조

- <생태환경모니터링네트워크건설방안>(국무원, 2015.7)은 2020년까지 환경질, 중점오염원, 생태환경 등에 관한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료공유 및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게 함
- <환경모니터링개혁심화 환경모니터링데이터질량제고에 관한 의견>(중공 중앙·국무원, 2017.9)는 환경자료의 수준을 제고하고 허위자료를 막도록 함
- 최근에는 <생태환경모니터링규획강요 2020-2035>(생태환경부, 2019.9)를 발표했고, 「생태환경모니터링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음

○ 환경오염원 확인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 <제2차 전국오염원 일제조사방안>(국무원, 2017.9)에 따라 공업오염원, 농업오염원, 생활오염원, 집중식 오염처리시설, 이동오염원 등에 대한 오염원 조사가 2019년까지 시행됨
- 오염방지공견전 관련 2019년 생태환경부에서 발해만과 장강 연안의 오염배출구 확인 및 정보화 작업을 시행
- <생태환경모니터링질량 감독검사 3년 행동계획(2018-2020)>(생태환경부, 2018.8)은 성(시) 환경모니터링기관, 중점지역의 중점배출업종(제지·화력발전·철강·화학·도시오수처리), 대기질·수질 자동측정소 등에서 환경자료 모니터링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자료조작 같은 위법행위는 없는지 등을 감독

○ 위성 등 과학장비를 이용한 모니터링과 보고체계

- 환경변화모니터링은 위성-드론-CCTV-현장확인을 이용하며, 우선 위성과 드론 등으로 확인 후 이상 발견시 즉시 현장관리자 핸드폰 APP에 전달해 점검하고 보고됨. 그 예로, 자연자원부는 위성을 이용해 해양 불법매립을 15일 주기로 감시하며 의심지역 파악시 즉시 확인해 처리
- 중국의 지구관측위성체계의 하나인 가오펀위성5호(2018.5.9. 발사)는 EMI, GMI, DPC 등을 장착해서 온실가스, 미량가스, 에어로졸, 성층권 화학가스수직분포 등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기후변화 뿐 아니라 중국 대기오염상황 모니터링을 진행
- ‘천리안계획’(생태환경부, 2018.8)은 징진지지역, 편웨이평원, 장삼각 등 80개 도시를 위성리모트센싱으로 관리하는데, 위성자료, 오염원자료,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3×3km²격자(그 중 10%는 더 세밀한 핫스팟 격자)로 나누어 관리
- 위성자료를 통합한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규제 지원을 위해 “생태환경부 위성환경응용센터”(www.secmap.cn) 설립·운영



<지구관측위성을 활용한 환경오염모니터링체계>

○ 환경자료 정보화 및 빅데이터 구축

- 〈생태환경빅데이터건설총체방안〉(환경보호부, 2016.3)은 빅데이터 건설과 응용업무를 다룬 것이며, ‘기구 1개(업무관리), 시스템 2개(표준규범·정보안전), 플랫폼 3개(응용·관리·클라우드)’을 구축하며, 그 임무는 데이터자원 통합공유, 과학적 정책결정, 감독관리 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빅데이터시범사업 추진으로 하였음
- 〈2018-2020년 생태환경정보화건설방안〉(생태환경부, 2018.4)은 환경정보구축, 보호와 정보기술의 융합, 오염방지공견전 지원, 환경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해 환경정보자원센터 건설, 빅데이터 응용, 행정서비스 제고 등을 추진
- 생태환경부 정보센터는 고정오염원DB, 전국오염원일제조사, 생태홍선 공간정보, 환경보호세 등 관련 자료 구축 및 지원
- 국가환경표준으로 〈생태환경정보기본자료편집규범〉(생태환경부, 2018.9) 제정하여 데이터 통합관리

○ 환경모니터링 업종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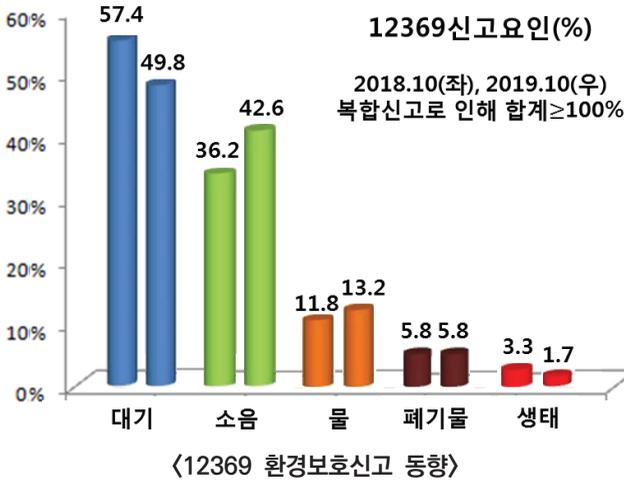
- 환경보호모니터링 업종은 2013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2018년 모니터링설비 영업수익은 약 220억위안이며, 대기처리설비 영업수익 170억위안, 수처리설비 영업수익 150억위안을 넘어섰음
- 모니터링 대상이 대기, 물 뿐 아니라 토양을 포함하고, 모니터링 지역을 중점구역에서 전국으로 넓히고 있어 환경모니터링 업종은 전망이 밝음

7

환경문제에 대한 공중참여

- 환경민원 및 환경공익소송 등 공중참여 장려
 - 「환경보호법」(2015.1 개정)은 민원신고(제57조)와 환경공익소송(제58조) 등으로 공중참여 강화
 - 「환경민원방법」(환경보호총국, 2006.6)이 제정되었고, 「환경신고핫라인 업무관리방법」(환경보호부, 2011.3)에 따른 환경보호신고 핫라인 ‘12369’ 운영
 - <생태환경위법행위신고장려업무강화 지도의견>(생태환경부, 2019.8)은 2019년까지 성정부, 2020년까지 시정부가 민원신고장려제도를 마련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민원처리업무기계개혁과 균중에 밀접한 생태 환경문제해결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생태환경부, 2019.11)는 생태환경 민원업무 개혁의 방향을 제시
 - 지방정부는 환경위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민대중의 환경위법행위 신고를 격려

- 환경문제 민원 접수 및 처리
 - 2016~2018년에 전국에서 생태환경보호와 관련된 159.2만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음
 - ‘12369’ 환경보호신고는 SNS,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접수하여 매달 공개하는데, 신고원인은 대기, 소음, 수질, 폐기물, 생태, 방사능 순이며, 신고업종은 건축, 축식·위락, 축산 순임. 2019년은 전년도에 비해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고, 대기민원이 여전히 가장 많지만 소음, 물 관련 민원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환경감찰과 민원의 연계

- 중앙의 생태환경보호감찰은 평소 환경신고가 많았던 고질적 환경문제나 국유기업을 포함하며, 감찰기간 중 민원신고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처리
- 2019년 환경보호감찰시 상하이·푸젠·하이난·칭하이는 대기, 충칭은 소음, 간쑤는 소음과 쓰레기 관련 신고가 많았음
- 환경민원은 지방정부의 환경관리수치 확인에도 유용한데, 그 예로 생태환경부는 도시흑약취수를 99% 정리했다고 보고 받았지만 2018년 감사시 민원자료와 위성관측 자료를 통해 60%를 넘은 수준으로 고침
- 행정편의적 생산정지명령 등 환경문제에 대한 ‘획일적’ 처분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편이 부각됨에 따라 평상시 미루다가 급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처리함

8

녹색세제 건설

○ 친환경세제 개혁 배경

- 중국 환경보호 관련 세제는 자원세, 소비세, 차량세, 선박세, 도시유지 보수건설세 등이 있으며, 주로 채굴, 생산, 소비 등 분야에 적용되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세금부과 부족
- 오염물질, 고체폐기물, 소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비 징수는 시행과정에서 강제성 부족, 지방정부 및 부처 간섭 등의 문제로 실효성 부족

○ 오염배출비를 환경보호세로 전환·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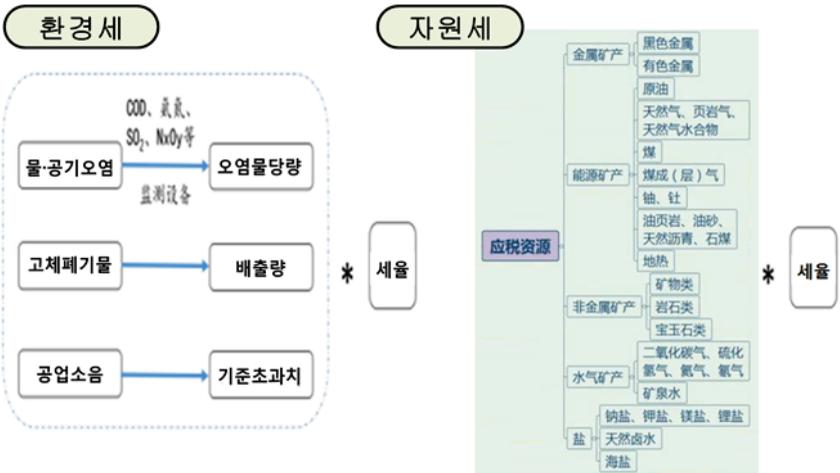
- 2018년 1월부터 「환경보호세법」과 실무법규인 「환경세실시조례」(국무원) 시행
- 기존 오염배출비 대신 환경세를 부과하며, 다양한 오염원에 직접 과세하여 배출저감효과를 제고
- 환경보호세 주요 내용
 - (과세대상) 징수대상은 4종(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이며, 수질오염의 경우 배출량이 많은 8종류(중금속 5종, 기타 물질 3종)에 대해 적용하고, 대기오염의 경우 배출량이 많은 3종류에 대해 적용
 - (과세액 산정) $\text{오염당량수} \times \text{세액기준} = \text{오염배출량} / \text{오염당량치} \times \text{세액기준}$
 - (세액기준) 대기 1.2~12위안/당량, 수질 1.4~14위안/당량, 고체폐기물 5~1천위안/톤, 소음(기준초과시) 350~11,200위안/월
 - (지역별 세액 조정) 지역별 경제발전정도에 따라 차등

- (과세감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배출기준의 30%, 50% 미만일 경우 환경보호세를 각각 25%, 50% 감면
- (과세면제) 농업생산, 차량·선박·항공기(타 법률로 과세), 오수·쓰레기 처리, 폐기물재활용
- (과세수입 편성) 전액 지방세수로 편성 및 사용
- 환경보호세 도입 효과
 - (과세징수관리강화) 종전 오염배출비는 환경보호부에서 맡았으나, 환경보호세는 세무당국에서 징수하고 환경보호부에서 배출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간섭이 줄고 관리가 강화됨
 - (세수 증가) 지방정부의 과세규정 정비, 과세대상 확대(수질의 경우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변경), 자동측정시설 설치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 예상
 - (환경시장확대) 주요 오염배출업종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배출량 자동측정시설 등 설치가 늘어나고 정부는 세수입을 환경시장에 재투자하면서 환경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자원세법」 제정으로 자원세 개혁

- 자원세는 자원절약과 집약이용을 촉진하고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함
- 1994년부터 2017년까지 9,325억위안을 징수했고, 징수액이 매년 15.9% 증가하여 2017년에 1,353억위안
- 과세기준을 수량(무게·부피)에서 가격(판매액 일정비율)으로 자원세를 책정하도록 통일하되, 일부 품목(지열·석회암·기타점토·사석·광천수·천연간수)은 수량으로 과세도 가능
- <자원세개혁 전면추진에 관한 통지>(재정부·국가세무총국, 2016.7)에 따라 자원세 개혁 추진

- 「자원세법」 제정 및 2020년 9월 시행 예정(기존 「자원세임시조례」 폐지)
- 자원세 세목도 변경되는데 에너지광산(원유·천연가스·석탄·지열 등), 금속광산(흑색금속·유색금속), 비금속광산(광물·암석·보석), 수기광산(가스류·광천수), 염류로 구분



〈환경세 및 자원세 과세대상과 과세액 산정〉

○ 수자원세 도입 추진

- 현재 「취수허가와 수자원비징수 관리조례」(국무원, 2006.4)에 따라 수자원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점차 수자원세로 변경해 나가는 상황
- <수자원세개혁시범사업임시방법>(재정부 외, 2016.7), <수자원세개혁시범사업확대실시방법>(재정부 외, 2017.12)으로 수자원세를 시범 시행 중이며, 시범사업은 허베이, 베이징, 톈진, 산시, 네이멍구, 산둥, 허난, 쓰촨, 산시, 닝샤에서 시행
- 수자원세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수자원세는 기존 수자원비에 비해 수자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세액계산방식에 차이가 있고 납세자·징세범위·세부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 (배출비용 차별화) 지표수보다 지하수 세액을 높게 하고,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용수관망이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세액을 높임. 세차장·목욕탕·골프장·스키장 등 특정업종에도 다소 높은 세액을 부과
 - (광업활동 지하수배수 징수) 광산업에서 채광활동으로 지하수가 나올 경우 배수량에 따라 징수
- 「자원세법」(제14조)에 따라 법시행 5년 이내에 수자원세징수시범사업 상황을 전인대에 보고 및 법률개정 추진 예정

9

당의 환경보호책임 강화

- 당내법규를 통해 당의 환경보호책임 강화
 - 공산당이 이끌어 통치하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당내법규와 국가 법률법규라는 두가지 법체계가 연동하여 생태환경보호를 추진하는 구조가 발달
 - 「환경보호법」(2015) 등 국가법률법규에서 각급 인민정부에게 환경보호 책임을 두지만 지방당위에는 책임이 없기에 '당정동책' 개념하에 당내 법규에 환경보호책임을 반영
 - 당정지도간부 생태환경손해책임추궁, 생태문명건설목표평가심사, 중앙 생태환경보호감찰업무에 관한 규정을 당중앙과 국무원이 공동 제정 (당정연합입법)하여 지방당위원회에도 생태환경보호 책임을 부여

중국특색사회주의국가법치체계

당내법규

상호조율

국가법률법규

당정연합입법

생태환경손해추궁방법(2015.8)
 생태문명건설목표평가심사방법(2016.12)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업무규정(2019.6)

〈당내법규와 국가법률법규의 조율 관계〉

○ 생태문명건설목표 추진에 대한 평가·심사

- <생태문명건설목표평가심사방법>(중공중앙·국무원 2016.12)은 성·자치구·직할시 생태문명건설을 연도별 평가(2016~), 심사(5년 1회)하며 국가 발개위 등 중앙정부에서 감독
- 평가는 자원이용, 환경관리, 환경질, 생태보호, 질적성장, 녹색생활, 대중만족도 등 7가지로 구성된 녹색발전지표체계 사용
- 심사는 5년규획 종료 후 하는데, 불합격이면 책임자 약담 및 개선조치를 취하며, 생태환경손해가 현저하면 주요 책임자들(이임, 퇴직 포함)에게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평가지표와 2016년 연차평가사례>

地 区	绿色发展指数	绿色发展指数主要评估各地区						公众满意程度
		资源利用指数	环境治理指数	环境质量指数	生态保护指数	增长质量指数	绿色生活指数	
北京	1	21	1	28	19	1	1	30
福建	2	1	14	3	5	11	9	4
浙江	3	5	4	12	16	3	5	9
上海	4						2	23
重庆	5						20	5
海南	6						15	3
湖北	7						17	20
湖南	8						25	7
江苏	9						3	17
云南	10						28	14
吉林	11						11	19
广西	12						22	15
广东	13						6	24
四川	14						27	8
江西	15						14	13
甘肃	16						23	11
贵州	17	26	19	7	7	19	26	2
山东	18	23	5	23	26	10	8	16
安徽	19	19	9	20	22	9	23	21
河北	20	18	2	30	13	25	19	31

○ 당·정 지도간부 업무실적 평가 및 문책

- 13.5환경규획의 오염악감 강제지표화, 생태문명건설종합평가 등으로 지도간부의 환경보호목표책임제를 시행함

- <당중앙지도간부 생태환경손해책임추궁방법(시행)>(중공중앙·국무원, 2015.8)에 따라 당·정이 환경보호 공동책임을 지며 이임이나 퇴직을 하더라도 책임추구를 함
- <고위간부 자연자원자산에 대한 이임 감사 규정(시행)>(중공중앙·국무원, 2017.6)은 2015년부터 시범실시한데 이어 이임시 회계 감사를 제도화
- 최근 「중국공산당문책조례」 개정·시행(2019.9)으로 생태환경보호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문책할 근거 확립

○ 당·정 기구 및 국유기업에 대한 환경보호감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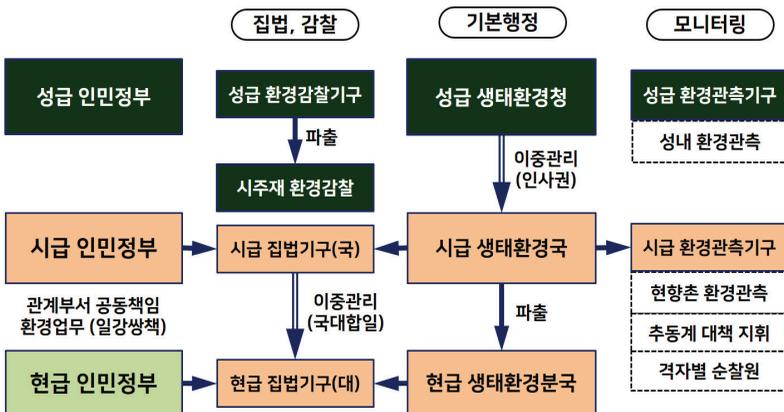
- <환경보호감찰방안(시행)>(중앙심화개혁소조, 2015.7) 이래 전국적 환경 보호감찰이 시작
-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업무규정>(중공중앙·국무원, 2019.6)은 생태환경 보호감찰업무를 규범화하고 환경보호책임을 독려
- 감찰조직으로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공작영도소조를 설립하였고, 생태 환경부에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판공실을 두고 영도소조의 일상업무를 맡고,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조’를 운영
-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은 일상감찰, 전문감찰, 그리고 감찰결과 조치 여부와 효과를 점검하는 ‘뒤돌아보기’(回头看)로 구분하며, 5년마다 중앙감찰을 하도록 의무화
- 감찰대상은 성·자치구·직할시 당과 정부 및 유관부문, 그 아래 정부 단위, 환경영향이 큰 국유기업 등
- 제2기1차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2019.7~8)은 6개 성(직할시)와 2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뒤돌아보기’를 실시했으며, 1.89만건 신고 접수 중 1.6만건 처리, 2.3억위안 벌금 부과 등 성과

10

지방환경조직 수직개혁

○ 성 이하 환경보호조직 수직개혁 배경 및 경과

- 그간 지방에서 경제발전을 중시하면서 환경보호 경시, 감찰집법 개입 등으로 환경보호에 문제 발생
- 지방환경조직 수직관리를 통해 지방의 환경보호책임을 실현하고, 지방 보호주의 폐단을 방지하며, 지역간·유역간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지방 환경보호기구 건설을 강화
-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제18기 5중전회에서 수직관리제도 실행을 발표했고, 이후 관련 13차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강요 등 정부규획에 반영
- <성 이하 환경보호기구 감측감찰집법 수직관리제도개혁 시범사업업무에 관한 지도의견>(중공중앙·국무원, 2016.9)에 따라 수직관리를 준비하여 2020년까지 전국에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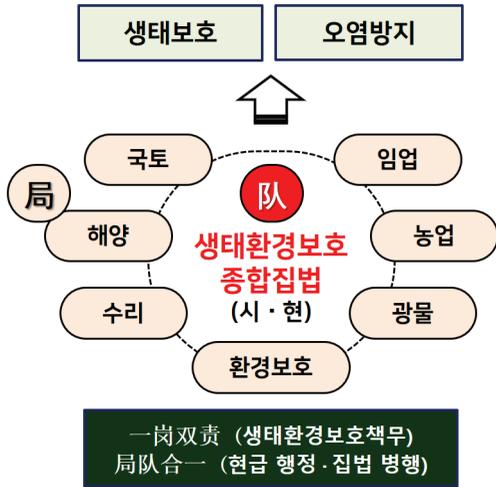
<성급 이하 환경보호기구 수직관리제도 개혁후 행정구조>

○ 수직관리 개혁 주요 내용

- 상급 지방당조직·정부가 하급 지방당조직·정부의 환경보호기구를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상급 정부기구의 일부라는 이중적 지위까지 부여하여 환경보호기구의 집행력을 높임
- 주요 조치
 - 성(환경보호청)에서 주요 책임자 인사권을 통해 시(환경보호국)를 관리하고, 시(환경보호국)는 성(환경보호청) 업무를 분담하는 이중 관리체계
 - 성(환경보호청 환경감시·감찰기구)에서 시급 환경감시·감찰 업무를 직접 진행하고 인원·경비 부담
 - 현급 환경보호기구는 따로 두지 않고 시급 환경보호국의 파출기구(환경보호분국)로 설치

○ 시급, 현급 지방정부에서 종합집법체계 건설

- 〈생태환경보호종합행정집법개혁심화지도의견〉(중공중앙·국무원, 2018. 12)은 오염방지와 생태보호를 목적으로 환경보호·국토·농업·수리·해양·임업·광물 등 생태환경보호 관계부문들을 조정하여 ‘생태환경보호종합집법’ 대오를 꾸리고 단일한 집법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함
- (一崗雙責) ‘한 직위 두 책무’에 따라 환경 외 소관업무 수행 중 환경 위법행위발견시에도 단속권한 집행
- (局隊合一) 현급 조직(생태환경분국)은 행정집법직책과 함께 종합집법대오(대)를 건설해 운영



〈시현급 지방정부의 통합적 환경집법조직체계〉

○ 지방정부의 수직개혁 관련 기타 조치

- 20개 성에서 업무통합조정을 위해 성·시·현 각급 생태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정부 주요 책임자가 주임을 맡음
- 시급 환경감찰기구와 환경모니터링기구(환경관측센터)를 두었고 일부 지방은 유역환경모니터링기구까지 설립하였으며, 대기질의 경우 현마다 관측장소까지 두는 등 관리기반을 대폭 강화하였음



IV. 참고자료 목록

I 환경정책 개요

中共中央·国务院(2015.9), 〈生态文明体制改革总体方案〉.

Zhou, G.(2017),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생태환경보호정책. KEI 중국환경브리프 2017(4): 6~8.

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四次全体会议(2019.10), 〈中共中央关于坚持和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 主义制度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若干重大问题的决定〉.

Baidu百科 ‘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

国务院(2016.11), 〈“十三五”生态环境保护规划〉.

中共中央·国务院(2015.11), 〈关于打赢脱贫攻坚战的决定〉.

中共中央·国务院(2018.6), 〈关于全面加强生态环境保护 坚决打好污染防治攻坚战的意见〉.

Baidu百科 ‘蓝天保卫战’.

Baidu百科 ‘三大攻坚战’.

经济日报(2018.6.30.), 生态环境部将开展“7+4”行动打好污染防治攻坚战.

中国环境APP(2020.1.15.), 直播中国环境记协2020年会, 生态环境部环境与经济政策研究中心主任 吴舜泽: 沧海横流方显英雄本色, 越是复杂期越是需要考验全社会的战略定力!

中国网(2019.9.29.), 提升生态文明, 建设美丽中国--国庆70周年第四场发布会直播, 李干杰: 我国 生态环境保护取得历史性成就 发生历史性, 转折性, 全局性变化.

王金南 等(2019), 中国环境保护战略政策70年历史变迁与改革方向. 环境科学研究 2019(10).

II 분야별 환경정책

II-1. 국토·자연환경

环境保护部(2014.1), 〈国家生态保护红线--生态功能基线划定技术指南(试行)〉.

中共中央·国务院(2017.2), 〈关于划定并严守生态保护红线的若干意见〉.

环境保护部·发展改革委(2017.5), 〈生态保护红线划定指南〉.

生态环境部·自然资源部(2019.8), 〈生态保护红线勘界定标技术规程〉.

Baidu图片‘生态保护红线’. (그림출처)

环境保护部(2017.12), 〈“生态保护红线, 环境质量底线, 资源利用上线和环境准入负面清单”编制技术指南(试行)〉.

中共中央·国务院(2019.11), 〈关于在国土空间规划中统筹划定落实三条控制线的指导意见〉.

长春市规划编制研究院(2018.4.23.), 长春市空间规划试点工作总结系列: “1+1+1=3”的全域空间管控模式探索. (그림출처)

中共中央·国务院(2017.3), 〈建立国家公园体制总体方案〉.

中共中央·国务院(2019.6), 〈关于建立以国家公园为主体的自然保护地体系的指导意见〉.

新华社(2019.10.30.), 我国将建立并完善自然保护地制度体系.

Baidu图片‘国家公园体制试点’. (그림출처)

重庆日报(2017.9.27.), 中国十大国家公园体制试点都是哪些. (사진출처)

中国绿色时报(2019.10.12.), 国家林草局: 东北虎豹祁连山大熊猫国家公园体制试点有序推进.

发展改革委(2019.11), 〈生态综合补偿试点方案〉.

中国环境报(2019.12.2.), 对话: 生态补偿机制应该怎么“补”?

环境保护部(2017.3), 「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管理条例(草案)」(征求意见稿).

云南省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2019.1), 「云南省生物多样性保护条例」.

新华网(2019.10.21.), 生物安全法草案拟对生物技术谬用等行为作出处罚.

生态环境部(2019.8.20.), 生物多样性公约第十五次缔约方大会筹备工作组织委员会第一次会议在京召开.

生态环境部(2019.9.3.), 生物多样性公约第十五次缔约方大会(COP15)主题发布.

II-2. 대기환경

- 国务院(2013.9), 〈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
- 国务院(2018.7), 〈打赢蓝天保卫战三年行动计划〉.
- 生态环境部大气司(2019.12.4.), ‘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重污染天气应对工作’, 生态环境部与KEI面谈资料. (그림출처)
- 生态环境部(2019.9), 〈蓝天保卫战量化问责规定〉.
- 生态环境部(2018.6), 〈2018-2019年蓝天保卫战重点区域强化督查方案〉.
- 生态环境部(2019.5), 〈蓝天保卫战重点区域强化监督定点帮扶工作方案〉.
- 生态环境部(2018.8), 〈关于推进重污染天气应急预案修订工作的指导意见〉.
- 生态环境部(2019.7), 〈关于加强重污染天气应对夯实应急减排措施的指导意见〉.
- 人民日报(2020.1.16.), 生态环境部部长在人民日报发表署名文章‘坚决打好打赢污染防治攻坚战’.
- 生态环境部(2020.1.17.), 生态环境部召开2020年1月例行新闻发布会(文字实录).
- 中国环境APP(2020.1.15.), 直播中国环境记协2020年会, 生态环境部环境与经济政策研究中心主任 吴舜泽: 沧海横流方显英雄本色, 越是复杂期越是需要考验全社会的战略定力!
- 新华社(2020.1.24.), 2019年治污“成绩单”出炉.
- 人民网(2020.1.3.), 北京市生态环境局: 2019年北京市空气质量持续改善.

II-3. 물환경

- 国务院(2015.4), 〈水污染防治行动计划〉.
- 环境保护部 等(2017.10), 〈重点流域水污染防治规划(2016-2020年)〉.
- 环境保护部·水利部(2018.3), 〈全国集中式饮用水水源地环境保护专项行动方案〉.
- 环境保护部·水利部(2019.8), 〈关于推动乡镇及以下集中式饮用水水源地生态环境保护工作的指导意见〉.
- 生态环境部(2020.1.17.), 生态环境部召开2020年1月例行新闻发布会(文字实录).

住建部·生态环境部(2018.9), 〈城市黑臭水体治理攻坚战实施方案〉.

生态环境部 等(2018.4), 〈重点流域水生生物多样性保护方案〉.

Baidu图片 ‘长江白鲟图片’. (그림출처)

新京报(2020.1.4.), 长江白鲟宣告灭绝, 2003年后再无白鲟实体现身.

澎湃新闻(2019.5.29.), 环境部七大流域生态环境监管局全部完成挂牌, 已参与强化督查.

生态环境部(2020.1.19.), 坚决打好碧水保卫战 生态环境部报告2019年进展和成效.

II-4.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国务院(2016.5), 〈土壤污染防治行动计划〉.

环境保护部(2016.12), 「污染地块土壤环境管理办法(试行)」.

环境保护部(2017.9), 「农用地土壤环境管理办法(试行)」.

生态环境部(2018.5), 「工矿用地土壤环境管理办法(试行)」.

生态环境部(2018.6), 国家标准 GB 15618-2018 〈土壤环境质量 农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试行)〉.

生态环境部(2018.6), 国家标准 GB 36600-2018 〈土壤环境质量 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试行)〉.

生态环境部 等(2019.3), 〈地下水污染防治实施方案〉.

II-5. 자원순환

环境保护部 等(2011.8), 「固体废物进口管理办法」.

环境保护部(2016.8), 「国家危险废物名录」.

国务院(2018.12), 〈“无废城市”建设试点工作方案〉.

国务院(2008.6), 〈关于限制生产销售使用塑料购物袋的通知〉.

海报新闻客户端(2019.12.17.), 2020年, 中国即将正式实施塑料微珠禁令.

发改委(2019.10),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

发改委·住建部(2016.12), 〈“十三五”全国城镇生活垃圾无害化处理设施建设规划〉

国务院(2017.3), 〈生活垃圾分类制度实施方案〉.
 住建部 等(2019.6), 〈关于在全国地级及以上城市全面开展生活垃圾分类工作的通知〉.
 国务院(2017.7), 〈禁止洋垃圾入境推进固体废物进口管理制度改革实施方案〉.
 生态环境部(2020.1.17.), 生态环境部召开2020年1月例行新闻发布会(文字实录).

II-6. 해양환경

国家海洋局(2015.7), 〈海洋生态文明建设实施方(2015-2020年)〉.
 国家海洋局(2018.2), 〈全国海洋生态环境保护规划(2017年-2020年)〉.
 生态环境部(2019.5), 〈2018年 中国海洋生态环境状况公报〉. (그림출처)
 国家海洋局(2016.6), 〈关于全面建立实施海洋生态红线制度的意见〉.
 国家海洋局(2017.3), 「海岸线保护与利用管理办法」.
 国家海洋局(2017.10). 〈贯彻落实围填海管控办法的指导意见〉.
 国家海洋局(2017.10), 〈贯彻落实围填海管控办法的实施方案〉.
 国务院(2018.7), 〈关于加强滨海湿地保护 严格管控围填海的通知〉.
 澎湃新闻(2019.8.1.), 自然资源部组建一年多三申严控围填海: 力度不减尺度不松.
 国家海洋局(2018.2), 「滨海湿地保护管理办法」(征求意见稿).
 国家海洋局(2017.1), 〈全国海岛保护工作“十三五”规划〉.
 国家海洋局(2016.10), 〈全国生态岛礁工程“十三五”规划〉.
 生态环境部 等(2018.11), 〈渤海综合治理攻坚战行动计划〉.
 中国环境报(2020.1.5.), 眸攻坚这一年: 长江渤海入河(入海)排污口逐个查清 水环境精准治理打响“当头炮”.
 生态环境部(2020.1.19.), 坚决打好碧水保卫战 生态环境部报告2019年进展和成效.
 生态环境部(2019.9), 〈中国移动源环境管理年报(2019)〉.
 海事局(2019.1), 「船舶压载水和沉积物管理监督管理办法(试行)」.
 交通部(2015.8), 〈船舶与港口污染防治专项行动实施方案(2015—2020年)〉.
 交通部(2015.12), 〈珠三角, 长三角, 环渤海(京津冀) 水域船舶排放控制区实施方案〉.

交通部(2018.11), 〈船舶大气污染物排放控制区实施方案〉.

交通部 等(2019.1), 〈关于建立完善船舶水污染物转移处置联合监管制度的指导意见〉.

环境保护部·国家质检总局(2018.1), 国家标准 GB 3552-2018 〈船舶水污染物排放控制标准〉.

II-7. 농업·농촌환경

国务院(2014.1), 「畜禽规模养殖污染防治条例」.

农业部(2015.4), 〈关于打好农业面源污染防治攻坚战实施意见〉.

环境保护部 等(2016.12), 〈水污染防治行动计划实施情况考核规定(试行)〉.

生态环境部·农业农村部(2018.11), 〈农业农村污染治理攻坚战行动计划〉.

이현우(2019), 생태문명전락시기 농업·농촌환경정책. KEI 중국환경브리프 2019(3): 1~4.

II-8. 환경보호재정

财政部(2019.11), 〈财政支持打好污染防治攻坚战 加快推动生态文明建设的意见(2019—2020年)〉.

财政部 等(2016.12), 〈关于加快建立流域上下游横向生态保护补偿机制的指导意见〉.

中国人大网(2019.12.25.), 国务院关于财政生态环保资金分配和使用情况的报告: 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五次会议上.

中国环境APP(2020.1.10.), 一图读懂: 全国人大常委会听取生态环保资金分配和使用情况报告.

中国环境报(2020.2.12.), 去年全年污染减排财政支出同比增长48.6%.

III 주제별 환경정책

III-1. 장강경제벨트 환경보호

Baidu百科 ‘长江经济带’. (그림출처)

中共中央政治局(2016.9), 〈长江经济带发展规划纲要〉.

习近平(2016.1), 推动长江经济带发展座谈会上的讲话.

中共中央政治局(2016.9), 〈长江经济带发展规划纲要〉.

中共中央·国务院(2019.12), 〈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

环境保护部 等(2017.7), 〈长江经济带生态环境保护规划〉.

环境保护部(2017.10), 〈重点流域水污染防治规划 (2016-2020年)〉.

生态环境部·发改委(2018.12), 〈长江保护修复攻坚战专项行动计划〉.

中共中央·国务院(2017.2), 〈关于划定并严守生态保护红线的若干意见〉.

中国环境报(2019.11.27), 皖赣滇“三线一单”成果通过审核 第一批十二省市技术审核工作全部完成.

中共中央·国务院(2016.12), 〈关于全面推行河长制的意见〉.

中共中央·国务院(2017.11), 〈关于在湖泊实施湖长制的指导意见〉.

人民日报(2019.1.16), 河长制湖长制全面建立 河湖管护进入新阶段.

封面新闻(2019.11.26), 直击环境部长江排污口千人大排查 9000公里岸线如何摸清“底数”?

生态环境部(2020.1.17.), 生态环境部召开2020年1月例行新闻发布会(文字实录).

中新网(2019.10.11.), 水利部: 全国已整治河湖“四乱”突出问题54879个.

中国环境报(2019.1.31.), 2018年水源地环境整治取得扎实成效.

中国网(2019.11.21.), 交通运输部: 新建内河船舶需配备生活污水处理或贮存装置.

中国新闻网(2019.9.17.), 长江经济带11省(市), 环渤海13城市完成污水处理厂排污许可证核发.

千篇一绿(2019.11.4.), 环境部摸排长江经济带园区排污账本首披露: 企业排污糊涂账污水厂“晒太阳”.

中国网(2019.3.11.), 李干杰: 去年中央财政支出50亿元支持长江生态补偿.

中国环境报(2019.8.14.), 赣湘建立淦水流域生态补偿机制.

新华网(2019.9.7.), 江西: 2700万元湿地生态补偿款 为候鸟“保驾护航”.

水利部(2019.9.), 〈关于加快规划编制工作 合理开发利用河道砂石资源的通知〉.

最高人民检察院(2020.1), 〈绿色发展·协作保障 服务保障长江经济带发展检察白皮书(2019)〉.

中央电视台(2018.12.14.), 焦点访谈: 督察回头看 见长江受伤害. (사진출처)

南方周末(2019.12.1.), 环境部: 长江警示片的163个问题已整改84个, 今后每年拍一部.

南方周末(2019.11.22), 多位“一把手”带头观看, 这部警示片警示了什么?

国务院(2018.9), 〈关于加强长江水生生物保护工作的意见〉.

科技日报(2019.10.24), 保护长江水生生物资源, 10年禁渔还不够?

农业农村部 等(2019.1), 〈长江流域重点水域禁捕和建立补偿制度实施方案〉.

中国新闻周刊(2019.12.9.), 长江无鱼之困: 再不保护“四大家鱼”基因库, 中国人将无鱼可吃. (사진출처)

人民日报(2019.11.28.), 长江流域182个水生生物保护区全面禁捕.

中国新闻周刊(2019.12.10.), 长江最后的渔民: 禁渔10年28万渔民如何弃水上岸?

中国人大网(2019.12.23.), 长江保护法草案首次提请审议.

新京报(2019.12.24.), 长江“禁渔”十年拟上升为法律.

이현우(2019), 장강경제벨트 환경정책 현황과 전망. KEI 중국환경브리프 2019(4): 6~11.

III-2. 추동계 대기오염관리

生态环境部大气司 (2019.12.4.), ‘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重污染天气应对工作’, 生态环境部与KEI面谈资料. (사진출처)

生态环境部 等(2019.10), 〈京津冀及周边地区2019-2020年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

生态环境部 等(2019.11), 〈汾渭平原2019-2020年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

生态环境部 等(2019.11), 〈长三角地区2019-2020年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

生态环境部(2018.8), 〈关于推进重污染天气应急预案修订工作的指导意见〉.

이승민(2019), 중국의 추동계 대기오염 계절관리제. KEI 중국환경브리프 2019(4): 1~5.

III-3. 동물 전염병에 따른 생물안전 대책

新华网(2019.10.21.), 生物安全法草案拟对生物技术谬用等行为作出处罚.

新华网(2019.10.22.), 生物安全法草案首次提请最高立法机关审议.

이현우(2019), 중국 생물안전법 입법 동향과 시사점. KBCH Biosafety 20(2): 58~59.

이현우(2019), 생태명문전략시기 농업·농촌 환경정책. KEI 중국환경브리프 2019(3): 1~4.

朱增勇(2019.11.6.), 중국 양돈시장 형세와 미래 전망. 2019 한중농업포럼 자료집,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베이징대표처.

农业农村部(2018.8), <关于切实加强生猪及其产品调运监管工作的通知>.

农业农村部(2018.12), <加快生猪生产恢复发展三年行动方案>.

生态环境部(2019.9.7.), 生态环境部, 农业农村部联合召开规范畜禽养殖禁养区划定和管理促进生猪生产发展视频会.

国家林草局(2018.8), <关于进一步做好野猪非洲猪瘟监测防控工作的紧急通知>.

中国日报(2019.3.14.), 国家林草局部署野猪非洲猪瘟等野生动物疫源疫病防控工作.

市场监管总局等(2020.1), <关于加强野生动物市场监管 积极做好疫情防控工作的紧急通知>.

市场监管总局等(2020.1), <关于禁止野生动物交易的公告>.

生态环境部(2020.1), <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医疗废物应急处置管理与技术指南(试行)>.

中国环境APP(2020.1.29.), 吃野兔都有风险! 餐桌上的“野味”藏着哪些致命病毒?(그림출처)

中国环境新闻(2020.2.10.), 全国人大常委会今年拟修改野生动物保护法 两高两部印发意见依法严惩 破坏野生动物资源犯罪.

第一财经(2020.2.21.), 10万份公众调查问卷: 97%不赞成吃“野味”.

全人大常务委(2020.2), <关于全面禁止非法野生动物交易, 革除滥食野生动物陋习, 切实保障人民群众生命健康安全的决定>.

III-4. 기업의 오염배출과 규제

国务院(2016.11), 〈控制污染物排放许可制实施方案〉.

环境保护部(2017.6), 「固定污染源排污许可分类管理名录(2017年版)」.

环境保护部(2018.1), 「排污许可管理办法(试行)」.

环境保护部(2011.3), 国家环境保护标准 HJ608-2011 〈染源编码规则(试行)〉.

矿业界(2017.5.20.), 环保制度重大改革, 这张环保身份证, 将成为排污唯一许可!

人民日报(2020.1.16.), 生态环境部部长在人民日报发表署名文章‘坚决打好打赢污染防治攻坚战’.

生态环境部(2018.9.3.), 截至8月中旬, 已核发23410张排污许可证: 近期将出台〈排污许可制全面支撑打好污染防治攻坚战工作方案〉. (사진출처)

环境保护部(2014.12), 「企业环境信用评价办法(试行)」.

环境保护部·发改委(2015.11), 〈关于加强企业环境信用体系建设的指导意〉.

神彩科技(2018.9.7.), 江苏环保信用评价体系建设经验.

江苏省发改委·生态环境厅(2019.5), 关于完善根据环保信用评价结果实行差别化价格政策的通知.

央广网(2019.10.10.), 贵州省生态环境保护失信黑名单管理办法 正式印发.

贵州省生态环境厅(2019.10.12.) 贵州制定出台企业环境信用评价工作指南.

经济日报(2016.10.4.), 江苏探索环境信用体系建设 红黑失信处处受阻. (그림출처)

中共中央·国务院(2018.1), 〈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改革方案〉.

生态环境部(2019.11.23.), “生态环境损害赔偿磋商十大典型案例”公众投票通道开启.

中国环境报(2019.10.10.), 透视最高检新闻发布会, 为何环境资源领域案件占据公益诉讼半壁江山?

中国纪检监察报(2019.11.23.), 破除“一刀切” 绘好“工笔画”.

国务院(2020.1), 「优化营商环境条例」.

澎湃新闻(2019.10.24.), 「优化营商环境条例」聚焦执法“一刀切”: 不得要求普遍停产.

中国化肥网(2018.9.21.), 被环保“一刀切”的企业能否要求赔偿? 法律: 能!

中共中央·国务院(2018.12), 〈关于深化生态环境保护综合行政执法改革的指导意见〉.
 中国政府网(2019.8.13.), 今年底前将项目环评审批时间压缩至法定时限的一半.
 生态环境部(2019.9.25.), 生态环境部发布「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表)编制监督管理办法」.
 生态环境部(2019.12.24.), 生态环境部有关负责同志就支持中小企业发展工作答记者问.

III-5.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发改委·住建部(2017.3), 〈生活垃圾分类制度实施方案〉.
 上海市(2019.7), 「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
 央视网(2019.11.26.), 最新标志发布! 46个城市小区垃圾分类覆盖率达53.9%.
 快科技(2019.11.17.), 住建部发布新版垃圾分类标准: 餐厨垃圾湿垃圾统一为厨余垃圾.
 中国产业信息网(2019.10.17.), 图解我国生活垃圾无害化处理现状: 焚烧处理增势明显.
 (그림출처)
 华泰证券(2020.2.7.), 垃圾发电行业系列报告: 2020抢装, 垃圾焚烧迎戴维斯双击.
 生态环境部(2020.1), 国家标准 GB 18485-2014 〈生活垃圾焚烧污染控制标准〉.
 生态环境部(2019.12.2.), 一图读懂「生活垃圾焚烧发电厂自动监测数据应用管理规定」.
 中投投资咨询网(2018.1.9.), 2018-2022年中国环保产业产值预测分析.

III-6. 환경모니터링 및 정보화

国务院(2015.7), 〈生态环境监测网络建设方案〉.
 中共中央·国务院(2017.9), 〈关于深化环境监测改革提高环境监测数据质量的意见〉.
 生态环境部(2019.9), 〈生态环境监测规划纲要(2020-2035年)〉.
 生态环境部(2019.10), 〈关于公开征求「生态环境监测条例」(草案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
 国务院(2017.9), 〈第二次全国污染源普查方案〉.
 中国海洋报(2019.1.23.), 查清所有向渤海和长江排污的“口子”.
 生态环境部(2018.8), 〈生态环境监测质量监督检查三年行动计划(2018-2020年)〉.
 科技日报(2019.7.8.), 环境监管有了智能“千里眼”.

新华日报(2018.5.10.), 监测大气污染, 中国“天眼”显身手. (그림출처)

인민망 한국어판(2018.5.10.), 중국 가오편5호 고해상도 관측위성 발사 성공, 대기오염도 측정한다.

Baidu百科 ‘千里眼计划’.

生态环境部(2018.9.7.), 我用“眼神”锁定你--漫解生态环境部“千里眼”计划. (그림출처)

环境保护部(2016.3), <生态环境大数据建设总体方案>.

生态环境部(2018.4.), <2018-2020年生态环境信息化建设方案>.

生态环境部(2018.9), 国家环境保护标准 HJ 966-2018 <生态环境信息基本数据集编制规范>.

中国报告网(2019.12.4.), 生态环境部专门印发<生态环境监测的规划纲要>, 生态环境监测行业发展 前景广阔.

III-7. 환경문제에 대한 공중참여

环境保护部(2011.3), 「环保举报热线工作管理办法」.

生态环境部(2019.8.), <关于加强生态环境违法行为举报奖励工作的指导意见>.

中国环境报(2020.1.14.), 生态环境部办公厅有关负责人就<关于改革完善信访投诉工作机制推进解决群众身边突出生态环境问题的指导意见>答记者问.

中国环境报(2020.1.14.), 李干杰: 深入贯彻党的十九届四中全会精神 改革完善生态环境信访工作机制.

生态环境部(2018.11.26.), 生态环境部通报10月全国“12369”环保举报办理情况.(그림출처)

生态环境部(2019.11.23.), 生态环境部通报10月全国“12369”环保举报办理情况.(그림출처)

中国环境APP(2019.8.6.), 一图读懂: 从信访举报中, 能看出哪些问题?

生态环境部(2018.5), <禁止环保“一刀切”工作意见>.

法制日报(2019.9.2.), 生态环境部专项治理“平时不作为急时一刀切”.

III-8. 녹색세계 건설

Yuan, Z.(2017), 중국 환경보호세계 운영방법. KEI 중국환경브리프 2017(2): 1~4.

장현숙(2016), 시행이 임박한 중국 환경보호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IT Trade Brief 32: 1~8.

中国产业信息网(2019.2.2.), 2018年中国环境监测行业快速增长 预计2019年市场空间超过400亿. (그림출처)

Baidu百科 ‘关于全面推进资源税改革的通知’.

中国人大网(2019.8.27.), 关于「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草案)」的说明.

Baidu图片 ‘一图看懂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그림출처)

Baidu百科 ‘扩大水资源税改革试点实施办法’.

新华社(2017.11.29.), 12月1日起水资源税试点扩至北京等9地 将择机推向全国.

山西省人民政府(2018.1.9.), 山西省水资源税改革试点新闻发布会.

III-9. 당의 환경보호책임 강화

中国环境新闻(2019.11.23.), 解读十九届四中全会精神: 党内法规增强了生态环境治理能力.

中国环境报(2019.9.25.), 提高执规能力 夯实党员干部环保责任.

中共中央·国务院(2016.12), 「生态文明建设目标评价考核办法」.

国家统计局 等(2017.12), 2016年生态文明建设年度评价结果公报. (그림출처)

北极星电力网(2016.12.23.), 发改委印发《绿色发展指标体系》, 《生态文明建设考核目标体系》.

Baidu图片 ‘绿色发展指标体系’.(그림출처)

中共中央·国务院(2015.8), 「党政领导干部生态环境损害责任追究办法(试行)」.

中共中央·国务院(2017.6), 「领导干部自然资源资产离任审计规定(试行)」.

中国共产党(2019.), 「中国共产党问责条例」.

新华网(2015.7.1.), 习近平主持召开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十四次会议.

中共中央·国务院(2019.6), 「中央生态环境保护督察工作规定」.

中国新闻网(2019.11.29.), 第二轮第一批中央生态环境保护督察已罚款超2.3亿元.

法制日报(2020.1.14.), 生态环境部: 2020年将继续开展第二轮中央生态环保督察.

III-10. 지방환경조직 수직개혁

人民日报(2015.11.21.), 垂管后县级环保部门不再是县政府组成部门 总量控制等到县级不能没了腿.

中共中央·国务院(2016.9), 〈关于省以下环保机构监测监察执法垂直管理制度改革试点工作的指导意见〉.

中共中央·国务院(2018.12), 〈关于深化生态环境保护综合行政执法改革的指导意见〉.

中国环境报(2019.3.19.), 生态环境保护综合执法队伍的定位及运行机制.

中国环境报(2019.9.17.), 垂改后, 环委会如何顺势而为?

中国环境报(2019.9.17.), 垂改来了, 县级部门有哪些期盼?

中国环境报(2019.9.19.), 垂改后, 县区环境监测与执法如何有效融合?

中国环境报(2019.11.1.), 十堰生态环境保护综合执法支队挂牌成立 各县实行“局队合一”体制.

집필자 : 이현우

발행인 : 이병훈

발행일 : 2020년 2월

발행처 : 한중환경협력센터 [비매품]

제작 : 가현기획 (Tel. 031.423.6684)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중환경협력센터와 집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